

1 Timothy B. Yoo - State Bar No. 254332
 tyoo@birdmarella.com
 2 Ray S. Seilie - State Bar No. 277747
 rseilie@birdmarella.com
 3 BIRD, MARELLA, RHOW,
 LINCENBERG, DROOKS & NESSIM, LLP
 4 1875 Century Park East, 23rd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67-2561
 5 Telephone: (310) 201-2100
 Facsimile: (310) 201-2110
 6
 7 Attorneys for HYBE Co., Ltd.; BELIFT LAB
 Inc.; and SOURCE MUSIC Co. Ltd.

8
 9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10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JOSE DIVISION**
 11

12
 13
 14 In Re *Ex Parte* Application of
 HYBE Co., Ltd.; BELIFT LAB Inc.; and
 15 SOURCE MUSIC Co., Ltd.

Case No. 3:24-mc-80228

***Ex Parte* Application for Order
 Authorizing Discovery for Use in
 Foreign Proceedings Pursuant to 28
 U.S.C. § 1782;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Concurrently Filed With:

- (1) Declaration of Jong-Uk Park;
- (2) Declaration of Wook Ki Lee;
- (3) Proposed Subpoena
- (4) Proposed Ord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 PARTE APPLICATION

Applicants HYBE Co., Ltd. (“HYBE”); BELIFT LAB Inc. (“BELIFT LAB”); and SOURCE MUSIC Co., Ltd. (“SOURCE MUSIC”) (collectively, “Applicants”) apply *ex parte* for an order pursuant to 28 U.S.C. § 1782 authorizing limited discovery for use in civil litigation in South Korea. Applicants request that the Court authorize the issuance of the subpoena appended as Attachment A to this application and memorandum. The subpoena seeks limited discovery from Google LLC (“Google”) necessary to identify the owners of specified YouTube accounts with whom Applicants are engaged in civil litigation in South Korea. This application is supported by the accompanying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proposed subpoena, and concurrently-filed declarations of Wook Ki Lee and Jong-Uk Park.

DATED: September 9, 2024

Timothy B. Yoo
Ray S. Seilie
Bird, Marella, Rhow,
Lincenberg, Drooks & Nessim, LLP



By: _____
Timothy B. Yoo
Attorneys for HYBE Co., Ltd., BELIFT LAB
Inc., and SOURCE MUSIC Co., Ltd.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MEMORANDUM OF POINTS AND AUTHORITIES

I. BACKGROUND AND SUMMARY OF ARGUMENT

This application is a straightforward request under 28 U.S.C. § 1782 for the Court’s assistance in issuing an enforceable discovery request to Google for information that will allow Applicants to identify the appropriate defendants in eight civil matters it is litigating in South Korea. The proposed subpoena, attached to this filing, is narrowly tailored to this purpose. The Court should grant Applicants’ request to issue the subpoena.

HYBE is an entertainment company based in South Korea. Declaration of Wook Ki Lee (“Lee Decl.”) ¶ 2. BELIFT LAB is one of HYBE’s wholly-owned subsidiaries, and SOURCE MUSIC is one of HYBE’s majority-owned subsidiaries. *Id.* Among other things, Applicants manage and train singers and musicians performing in the globally popular K-pop genre, including such U.S. Billboard-topping acts as BTS and TOMORROW X TOGETHER. *Id.* ¶ 4. Consumers of Applicants’ entertainment typically learn about the companies and their talent rosters through online searches. *Id.* Statements made on social media or elsewhere on the internet are therefore able to dramatically affect their business and reputation. *Id.*

This application relates to litigation in South Korea primary concerning defamatory and harassing statements against Applicants, ILLIT (a female K-pop group that BELIFT LAB manages), and LE SSERAFIM (a female K-pop group that SOURCE MUSIC manages) that have been communicated or propagated through videos posted on YouTube by anonymous individuals. *Id.* ¶ 5. Among other things, statements in these videos falsely accuse (i) Applicants and ILLIT of plagiarizing content from other artists, including a female K-pop group called NewJeans, and (ii) Applicants and LE SSERAFIM, another female K-pop group that SOURCE MUSIC manages) of covertly trying to mask their singing abilities during live performances. *Id.* Applicants have initiated eight separate civil litigation matters in South Korea (in which one or more of them are named plaintiffs) alleging that the anonymous publishers of these videos have committed defamation and business interference under Articles 750 and 751 of the Civil Act of Korea (the “Korean

1 Proceedings”). *See* Declaration of Jong-Uk Park (“Park Decl.”)Decl. ¶¶ 1–3.¹

2 Applicants do not seek to litigate here the merits of their claims against these
3 anonymous publishers. They only seek this Court’s assistance in obtaining limited
4 discovery that would enable them to determine the identities of these publishers, so that
5 they can identify the appropriate defendants and advance the Korean Proceedings. Such
6 relief is warranted here because (1) this application meets the basic statutory requirements
7 of Section 1782; and (2) the discretionary factors set forth by the Supreme Court in *Intel*
8 all support this application.

9 II. ARGUMENT

10 A. Legal Standards

11 Section 1782(a) authorizes a district court to order the production of documents or
12 testimony in support of an action pending before a foreign tribunal. It provides, in relevant
13 part:

14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a person resides or is
15 found may order him to give his testimony or statement or to
16 produce a document or other thing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17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The order may be made
18 pursuant to a . . . request made . . . upon the application of any
19 interested person and may direct that the testimony or
20 statement be given, or the document or other thing be
21 produced, before a person appointed by the court. To the extent
22 that the order does not prescribe otherwise, the testimony or
23 statement shall be taken, and the document or other thing
24 produced,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Rules of Civil
25 Procedure.

26 28 U.S.C. § 1782(a). This statutory language “has been distilled to permit district courts to
27 authorize discovery where three general requirements are satisfied: (1) the person from
28 whom the discovery is sought ‘resides or is found’ in the district of the district court where

1 The five members of ILLIT are also named plaintiffs in five of the eight Korean Proceedings, and the five members of LE SSERAFIM are also named plaintiffs in two of the eight Korean Proceedings.

1 the application is made; (2) the discovery is ‘for use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2 international tribunal’; and (3) the application is made by a foreign or international tribunal
3 or ‘any interested person.’” *Khrapunov v. Prosyankin*, 931 F.3d 922, 924 (9th Cir. 2019).

4 If the Section 1782(a)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courts must then consider the
5 factors set forth in *Intel Corp. v. Advanced Micro Devices, Inc.*, 542 U.S. 241, 264 (2004)
6 in exercising their discretion over whether to grant the application. Specifically,

7 a district court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four factors
8 identified by the Supreme Court: (1) whether the ‘person from
9 whom discovery is sought is a participant in the foreign
10 proceeding’; (2) ‘the nature of the foreign tribunal, the
11 character of the proceedings underway abroad, and the
12 receptivity of the foreign government or the court or agency
13 abroad to U.S. federal court judicial assistance’; (3) whether
14 the request ‘conceals an attempt to circumvent foreign proof-
15 gathering restrictions or other policies of a foreign country or
the United States’; and (4) whether the request is ‘unduly
intrusive or burdensome.’

16 *In re Starship Entm’t Co., Ltd.*, No. 23-mc-80147-BLF, 2023 WL 3668531, at *2 (N.D.
17 Cal. May 24, 2023) (quoting *Intel*, 542 U.S. at 254–65).

18 This application meets the statutory requirements set forth in Section 1782(a), and
19 all four *Intel* factors support the exercise of the Court’s discretion to grant it.

20 **B. Applicants’ Request Satisfies the Requirements of Section 1782(a)**

21 This application meets the three statutory requirements of Section 1782(a).

22 First, the application has been filed with “[t]he district court of the district in which
23 [the] person resides or is found.” 28 U.S.C. § 1782(a). That requirement is met here: the
24 subpoena is directed to Google, whose principal office is located in Mountain View,
25 California, which is in this district. Park Decl. ¶ 4.

26 Second, the requested discovery will be “use[d] in a proceeding in a foreign or
27 international tribunal.” 28 U.S.C. § 1782(a). Civil litigation has already commenced in
28 South Korea, and the discovery being sought through this application will be used in those

1 proceedings. Lee Decl. ¶¶ 6, 8. *See also In re Request for Jud. Assistance from Seoul Cent.*
2 *Dist. Ct.*, No. 5:23-mc-80016-BLF, 2023 WL 2394545, at *3 (N.D. Cal. Mar. 7, 2023)
3 (finding the second factor is “clearly met” where discovery being sought was for use in “a
4 civil proceeding in a foreign tribunal—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5 Third, the sought discovery is being requested by “interested person[s]”: HYBE and
6 BELIFT LAB are co-plaintiffs in four of the Korean Proceedings, SOURCE MUSIC is a
7 plaintiff in two of the Korean Proceedings, and BELIFT LAB is a plaintiff in the
8 remaining two of the Korean Proceedings. *See Akebia Therapeutics, Inc. v. FibroGen, Inc.*,
9 793 F.3d 1108, 1110 (9th Cir. 2015) (“An ‘interested person’ seeking to invoke the
10 discovery mechanism set forth under § 1782 may include ‘not only litigants before foreign
11 or international tribunals, but also foreign and international officials as well as any other
12 person whether he be designated by foreign law or international convention or merely
13 possess a reasonable interest in obtaining [judicial] assistance.” (quoting *Intel*, 542 U.S.
14 at 256–57)). Applicants seek discovery from Google in order to ascertain the identity of
15 the appropriate defendants in those matters. Lee Decl. ¶¶ 6, 8.

16 C. All Four *Intel* Factors Support Applicants’ Request

17 The Court should also exercise its discretion to grant this application because all
18 four *Intel* factors support the relief sought by Applicants.

19 First, Google is not a participant in the Korean Proceedings and resides outside the
20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Park Decl. ¶ 4. The fact that the Korean court cannot itself
21 order Google to produce the requested evidence supports Applicants’ discovery request.
22 *See Intel*, 542 U.S. at 264 (“[N]onparticipants in the foreign proceeding may be outside the
23 foreign tribunal’s jurisdictional reach; hence, their evidence,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24 may be unobtainable absent § 1782 aid.”). The first *Intel* factor therefore supports granting
25 the application. *See Starship Entm’t*, 2023 WL 3668531, at *3.

26 Second, “the nature of the foreign tribunal, the character of the proceedings
27 underway abroad, and the receptivity of the foreign government or the court or agency
28 abroad to U.S. federal-court judicial assistance” also supports granting this application.

1 This factor “focuses on whether the foreign tribunal is willing to consider the information
2 sought.” *United States v. Google LLC*, 690 F. Supp. 3d 1011, 1020 (N.D. Cal. 2023). “This
3 factor weighs in favor of discovery unless the foreign tribunal in question has expressly
4 made it clear that it would not accept the evidence.” *Id.* As courts in this district have
5 found, South Korean courts have not issued any kind of directive against the use of Section
6 1782 evidence. *Starship Entm’t*, 2023 WL 3668531, at *3. This conclusion is corroborated
7 by the declaration of Jong-Uk Park,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law in South Korea.
8 Park Decl. ¶¶ 1, 3, 6. The second *Intel* factor therefore weighs in favor of granting the
9 application.

10 Third, this application does not seek to “circumvent foreign proof-gathering
11 restrictions.” As explained in Park’s declaration, were Google subject to South Korean
12 courts’ jurisdiction, Applicants would be able to obtain the information they seek through a
13 South Korean subpoena. Park Decl. ¶ 4. Applicants are not trying to circumvent South
14 Korean discovery rules, but are making their request through this Court because it has
15 jurisdiction over Google. This factor therefore supports granting this application.

16 Fourth, the discovery Applicants seek from Google is not “unduly intrusive or
17 burdensome.” *Intel*, 542 U.S. at 265. Here, the proposed subpoena—Attachment 1 to this
18 document—seeks information that is narrowly tailored to its purposes: to ascertain the
19 identity of the individual or individuals who are publishing the statements at issue in the
20 Korean Proceedings. Courts in this district routinely grant Section 1782 applications
21 seeking similar categories of information. *See, e.g., Starship Entm’t*, 2023 WL 3668531, at
22 *4 (granting Section 1782 application seeking from Google “information that is necessary
23 to identify the putative defendants”); *In re Medical Corp. Seishinkai*, No. 21-mc-80160-
24 SVK, 2021 WL 3514072, at *5 (N.D. Cal. Aug. 10, 2021) (granting Section 1782
25 application seeking “sufficient information to identify the users of” two Google accounts).
26 The subpoena does not seek the substance of any user communications or anything beyond
27 wha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e statements at issue in the
28 Korean Proceedings.

1 The Supreme Court’s *Intel* factors therefore support Applicant’s request.

2 **D. Ex Parte Relief Is Appropriate for Requests Under Section 1782**

3 This application is also the proper subject of *ex parte* relief. Courts in this district
4 regularly grant Section 1782 applications on an *ex parte* basis because “parties will be
5 given adequate notice of any discovery taken pursuant to the request and will then have the
6 opportunity to move to quash the discovery or to participate in it.” *IPCom GMBH & Co.*
7 *KG v. Apple Inc.*, 61 F. Supp. 3d 919, 922 (N.D. Cal. 2014) (quoting *In re Republic of*
8 *Ecuador*, No. C-10-80225 MISC CRB, 2010 WL 3702427, at *2 (N.D. Cal. Sep. 15,
9 2010)). To the extent Google believes that Applicants’ discovery requests are
10 objectionable after it receives them, it will have an opportunity to address them, including
11 before this Court if necessary.

12 **III. CONCLUSION**

13 The Court should grant the application and enter an order authorizing Applicants to
14 serve the appended subpoena on Google.

15
16 DATED: September 9, 2024

Timothy B. Yoo
Ray S. Seilie
Bird, Marella, Rhow,
Lincenberg, Dooks & Nessim, LLP

17
18
19 

20 By: _____
21 Timothy B. Yoo
22 Attorneys for HYBE Co., Ltd., BELIFT LAB
23 Inc., and SOURCE MUSIC Co., Ltd.
24
25
26
27
28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ATTACHMENT A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In re Ex Parte Application of HYBE Co., Ltd. et al.

Plaintiff

v.

Defendant

Civil Action No.

SUBPOENA TO PRODUCE DOCUMENTS, INFORMATION, OR OBJECTS OR TO PERMIT INSPECTION OF PREMISES IN A CIVIL ACTION

To: Google LLC

(Name of person to whom this subpoena is directed)

Production: YOU ARE COMMANDED to produce at the time, date, and place set forth below the following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objects, and to permit inspection, copying, testing, or sampling of the material: See Attachment A

Place: By email to: tyoo@birdmarella.com By mail to: Bird Marella LLP, 1875 Century Park East, 23rd Fl, Los Angeles, CA 90067	Date and Time: 09/23/2024 9:00 am
---	--------------------------------------

Inspection of Premises: YOU ARE COMMANDED to permit entry onto the designated premises, land, or other property possessed or controlled by you at the time, date, and location set forth below, so that the requesting party may inspect, measure, survey, photograph, test, or sample the property or any designated object or operation on it.

Place:	Date and Time:
--------	----------------

The following provisions of Fed. R. Civ. P. 45 are attached – Rule 45(c), relating to the place of compliance; Rule 45(d), relating to your protection as a person subject to a subpoena; and Rule 45(e) and (g), relating to your duty to respond to this subpoena and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not doing so.

Date: 9/9/2024

CLERK OF COURT

OR

Signature of Clerk or Deputy Clerk



Attorney's signature

The name, address, e-mail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of the attorney representing (name of party) All Applicants, who issues or requests this subpoena, are:

Timothy B. Yoo; Bird Marella, LLP 1875 Century Park East, 23rd Fl, Los Angeles, CA 90067; tyoo@birdmarella.com

Notice to the person who issues or requests this subpoena

If this subpoena commands the production of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tangible things or the inspection of premises before trial, a notice and a copy of the subpoena must be served on each party in this case before it is served on the person to whom it is directed. Fed. R. Civ. P. 45(a)(4).

Civil Action No. _____

PROOF OF SERVICE

(This section should not be filed with the court unless required by Fed. R. Civ. P. 45.)

I received this subpoena for *(name of individual and title, if any)* _____
on *(date)* _____.

I served the subpoena by delivering a copy to the named person as follows: _____
_____ on *(date)* _____; or

I returned the subpoena unexecuted because: _____
_____.

Unless the subpoena was issued on behalf of the United States, or one of its officers or agents, I have also
tendered to the witness the fees for one day's attendance, and the mileage allowed by law, in the amount of
\$ _____.

My fees are \$ _____ for travel and \$ _____ for services, for a total of \$ _____ 0.00.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is information is tr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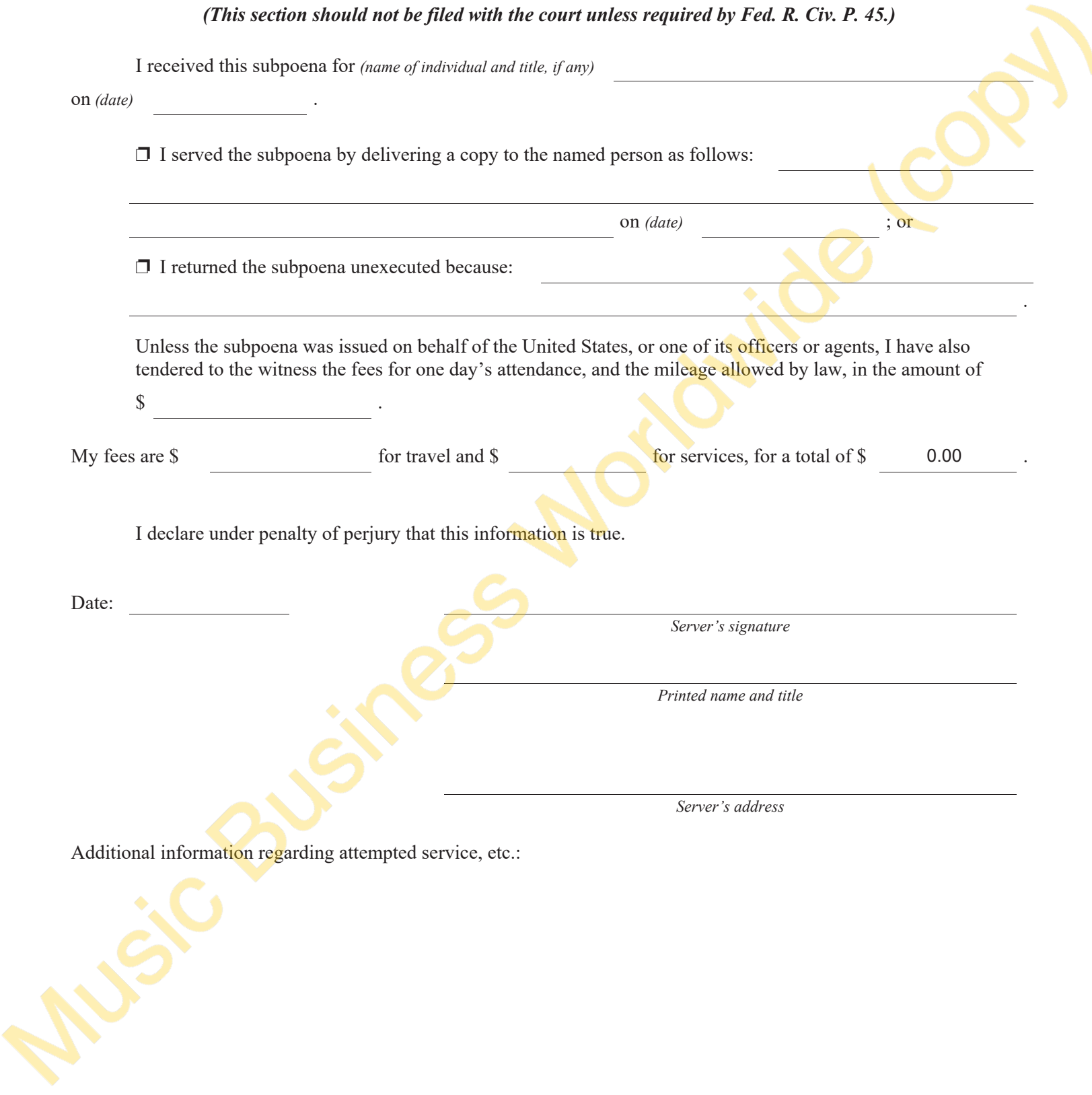
Date: _____

Server's signature

Printed name and title

Server's address

Additional information regarding attempted service, etc.: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45 (c), (d), (e), and (g) (Effective 12/1/13)**(c) Place of Compliance.**

(1) For a Trial, Hearing, or Deposition. A subpoena may command a person to attend a trial, hearing, or deposition only as follows:

- (A) within 100 miles of where the person resides, is employed, or regularly transacts business in person; or
- (B) within the state where the person resides, is employed, or regularly transacts business in person, if the person
 - (i) is a party or a party's officer; or
 - (ii) is commanded to attend a trial and would not incur substantial expense.

(2) For Other Discovery. A subpoena may command:

- (A) production of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tangible things at a place within 100 miles of where the person resides, is employed, or regularly transacts business in person; and
- (B) inspection of premises at the premises to be inspected.

(d) Protecting a Person Subject to a Subpoena; Enforcement.

(1) Avoiding Undue Burden or Expense; Sanctions. A party or attorney responsible for issuing and serving a subpoena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avoid imposing undue burden or expense on a person subject to the subpoena.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compliance is required must enforce this duty and impose an appropriate sanction—which may include lost earnings and reasonable attorney's fees—on a party or attorney who fails to comply.

(2) Command to Produce Materials or Permit Inspection.

(A) Appearance Not Required. A person commanded to produce document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or tangible things, or to permit the inspection of premises, need not appear in person at the place of production or inspection unless also commanded to appear for a deposition, hearing, or trial.

(B) Objections. A person commanded to produce documents or tangible things or to permit inspection may serve on the party or attorney designated in the subpoena a written objection to inspecting, copying, testing, or sampling any or all of the materials or to inspecting the premises—or to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the form or forms requested. The objection must be served before the earlier of the time specified for compliance or 14 days after the subpoena is served. If an objection is made, the following rules apply:

- (i) At any time, on notice to the commanded person, the serving party may move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compliance is required for an order compelling production or inspection.
- (ii) These acts may be required only as directed in the order, and the order must protect a person who is neither a party nor a party's officer from significant expense resulting from compliance.

(3) Quashing or Modifying a Subpoena.

(A) When Required. On timely motion,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compliance is required must quash or modify a subpoena that:

- (i) fails to allow a reasonable time to comply;
- (ii) requires a person to comply beyond the geographical limits specified in Rule 45(c);
- (iii) requires disclosure of privileged or other protected matter, if no exception or waiver applies; or
- (iv) subjects a person to undue burden.

(B) When Permitted. To protect a person subject to or affected by a subpoena,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compliance is required may, on motion, quash or modify the subpoena if it requires:

- (i) disclosing a trade secret or other confidential research, development, or commercial information; or

(ii) disclosing an unretained expert's opinion or information that does not describe specific occurrences in dispute and results from the expert's study that was not requested by a party.

(C) Specifying Conditions as an Alternative. In the circumstances described in Rule 45(d)(3)(B), the court may, instead of quashing or modifying a subpoena, order appearance or production under specified conditions if the serving party:

- (i) shows a substantial need for the testimony or material that cannot be otherwise met without undue hardship; and
- (ii) ensures that the subpoenaed person will be reasonably compensated.

(e) Duties in Responding to a Subpoena.

(1) Producing Documents or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se procedures apply to producing documents or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 Documents. A person responding to a subpoena to produce documents must produce them as they are kept in the ordinary course of business or must organize and label them to correspond to the categories in the demand.

(B) Form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Not Specified. If a subpoena does not specify a form for producing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person responding must produce it in a form or forms in which it is ordinarily maintained or in a reasonably usable form or forms.

(C)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Produced in Only One Form. The person responding need not produce the sam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n more than one form.

(D) Inaccessibl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The person responding need not provide discovery of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from sources that the person identifies as not reasonably accessible because of undue burden or cost. On motion to compel discovery or for a protective order, the person responding must show that the information is not reasonably accessible because of undue burden or cost. If that showing is made, the court may nonetheless order discovery from such sources if the requesting party shows good cause,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Rule 26(b)(2)(C). The court may specify conditions for the discovery.

(2) Claiming Privilege or Protection.

(A) Information Withheld. A person withholding subpoenaed information under a claim that it is privileged or subject to protection as trial-preparation material must:

- (i) expressly make the claim; and
- (ii) describe the nature of the withheld documents, communications, or tangible things in a manner that, without revealing information itself privileged or protected, will enable the parties to assess the claim.

(B) Information Produced. If information produced in response to a subpoena is subject to a claim of privilege or of protection as trial-preparation material, the person making the claim may notify any party that received the information of the claim and the basis for it. After being notified, a party must promptly return, sequester, or destroy the specified information and any copies it has; must not use or disclose the information until the claim is resolved; must take reasonable steps to retrieve the information if the party disclosed it before being notified; and may promptly present the information under seal to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compliance is required for a determination of the claim. The person who produced the information must preserve the information until the claim is resolved.

(g) Contempt.

The court for the district where compliance is required—and also, after a motion is transferred, the issuing court—may hold in contempt a person who, having been served, fails without adequate excuse to obey the subpoena or an order related to i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ATTACHMENT A

Definitions

1. The term “Document” or “Documents” shall mean a writing, as defined in Rule 34(a) of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related Rule 1001 of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and includes the original or a copy of drawings, graphs, charts, photographs, sound recordings, images, other data compilations and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and every other means of recording upon any tangible thing and form of communicating or representation, including letters, words, pictures, sounds, or symbols, or combination of them.

2. The term “Google Accounts” means the Google account(s) and/or YouTube account(s) registered or otherwise linked to the person(s) who created, used and/or otherwise logged in to the following YouTube channels:

a. “Cute Rabbit Jijang” (“**귀여운토끼장**” in Korean), accessible through the URL “<https://www.youtube.com/@토끼장>”;

b. “EnterPick” (“**엔터픽**” in Korean), accessible through the URL “https://www.youtube.com/@EnterPick_Official”;

c. “People Box” (“**피플박스**” in Korean), accessible through the URL “<https://www.youtube.com/@peopleboxkorea>”;

d. “Da Issue” (“**다이슈**” in Korean), accessible through the URL “<https://www.youtube.com/@daissuekorea>”;

e. “NewJeansFam” (“**뉴진스팸**” in Korean), accessible through the URL <https://www.youtube.com/@newjeanspam> or <https://www.youtube.com/@user-un2eb4jr6v>;

f. “Wangjam Issue” (“**왕잼이슈**” in Korean), accessible through the URL “https://www.youtube.com/@nowissue_”; and

g. “Issue Tan” (“**이슈탄**” in Korean), accessible through the URL “https://www.youtube.com/@issue_tan”.

3. The term “Access Logs” means the dates and times (or timestamps), Internet Protocol (IP) addresses, activity types, port numbers, and any other related information that is kept by Google LLC when users or accountholders login or upload videos to their Google Account(s).

Requests for Productio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1. Documents sufficient to identify the Google account ID(s), Google account created date(s), name(s), date(s) of birth, gender(s), phone number(s), email address(es), and address(es) of the person(s) who created, used, and/or otherwise logged in to each of the Google Accounts. To the extent that Access Logs are provided to identify the user(s) of each of the Google Accounts, this request seeks at least the last ten Access Logs and the time zone(s) associated with the timestamps in those Access Logs.

2. Documents sufficient to identify the name(s), date(s) of birth, gender(s), phone number(s), and address(es) of the person(s) associated with credit card(s), bank account(s), and/or other electronic commerce details registered with each of the Google Accounts. This request does not seek the actual credit card numbers, bank account numbers, or the electronic commerce account numbers or passwords, and it does not seek any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1 Timothy B. Yoo - State Bar No. 254332
 tyoo@birdmarella.com
 2 Ray S. Seilie - State Bar No. 277747
 rseilie@birdmarella.com
 3 BIRD, MARELLA, RHOW,
 LINCENBERG, DROOKS & NESSIM, LLP
 4 1875 Century Park East, 23rd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67-2561
 5 Telephone: (310) 201-2100
 Facsimile: (310) 201-2110

6 Attorneys for HYBE Co., Ltd., BELIFT LAB
 7 Inc., and SOURCE MUSIC Co., Ltd.

8
 9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10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JOSE DIVISION**

11 Case No. 3:24-mc-80228

12 *In Re Ex Parte* Application of HYBE Co.,
 13 Ltd., BELIFT LAB Inc., and SOURCE
 14 MUSIC Co., Ltd.

**Declaration of Jong-Uk Park in Support
 of HYBE Co., Ltd.'s, BELIFT LAB
 Inc.'s, and SOURCE MUSIC Co., Ltd.'s
 Ex Parte Application for Order
 Authorizing Discovery for Use in
 Foreign Proceedings Pursuant to 28
 U.S.C. § 1782**

DECLARATION OF JONG-UK PARK

I, Jong-Uk Park, declare as follows:

1. I am a senior attorney at Kim & Chang, a law firm in Seoul, South Korea. I am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law in South Korea and am representing Applicants HYBE Co., Ltd., BELIFT LAB Inc., and SOURCE MUSIC Co., Ltd. I am making this declaration in support of Applicants' *Ex Parte* Application for Order Authorizing Discovery for Use in Foreign Proceedings Pursuant to 28 U.S.C. § 1782. I have personal knowledge of the facts set forth herein, which are known by me to be true and correct, and if called as a witness, I could and would competently testify thereto.

2. I currently represent one or more Applicants in eight separate civil litigation matters arising from defamatory statements made by anonymous individuals in YouTube videos about my clients and the groups and performers whom they represent and manage (collectively, the "Korean Proceedings"). Copies of the initiating pleadings in those matters are attached to this declaration as follows:

a. Attached as **Exhibit 1**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filed civil complaint in the matter *HYBE Co., Ltd. and BELIFT LAB Inc. v. Unknown Individual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 "Cute Rabbit Jjang,"* captioned 2024Ga-Dan281245, which my firm filed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b. Attached as **Exhibit 2**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filed civil complaint in the matter *BELIFT LAB Inc., et al. v. Unknown Individual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 "Enterpick,"* captioned 2024-Ga-Dan281276, which my firm filed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c. Attached as **Exhibit 3**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filed civil complaint in the matter *HYBE Co., Ltd., BELIFT LAB Inc., et al. v. Unknown Individuals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s "People Box" and "Da Issue,"* captioned 2024Ga-Dan281283, which my firm filed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d. Attached as **Exhibit 4**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civil complaint in the matter *BELIFT LAB Inc., et al. v. Unknown Individual Operating the YouTube*

1 Channel “NewJeansFam,” captioned 2024Ga-Dan281252, which my firm filed in Seoul
2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3 e. Attached as **Exhibit 5**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filed civil
4 complaint in the matter *HYBE Co., Ltd., BELIFT LAB Inc., et al. v. Unknown Individual*
5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 “Wangjam Issue,”* captioned 2024Ga-Dan281290, which
6 my firm filed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7 f. Attached as **Exhibit 6**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filed civil
8 complaint in the matter *HYBE Co., Ltd., BELIFT LAB Inc., et al. v. Unknown Individual*
9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 “Issue Tan,”* captioned 2024Ga-Dan281221, which my
10 firm filed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11 g. Attached as **Exhibit 7**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filed civil
12 complaint in the matter *SOURCE MUSIC Co., Ltd., et al. v. Unknown Individual*
13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 “Enterpick,”* captioned 2024Ga-Dan281269, which my
14 firm filed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15 h. Attached as **Exhibit 8** is a true and correct copy of the filed civil
16 complaint in the matter *SOURCE MUSIC Co., Ltd., et al. v. Unknown Individual*
17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s “People Box” and “Da Issue,”* captioned 2024Ga-
18 Dan281238, which my firm filed in Seoul Western District Court on August 30, 2024.

19 3. Based on my 31 years as an attorney licensed to practice law in South Korea,
20 I believe that Applicants have a good faith basis to believe that Exhibits 1 through 8 set
21 forth valid legal claims for defamation, among other civil torts cognizable under South
22 Korean law.

23 4. Despite reasonable efforts, I have been unable to determine the identities of
24 the individual or individuals operating the YouTube channels at issue in each of the
25 Korean Proceedings. If Google wer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Korean courts, this
26 information could be obtained through discovery in the Korean Proceedings themselves.
27 However, Google’s principal office is located in Mountain View, California, which is
28 within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Korean courts do not have jurisdiction over

1 Google, which is why this application is necessary.

2 5. The information requested by the subpoena will be used solely to identify
3 and demonstrate the identity of the appropriate defendants in the Korean Proceedings.

4 6. I believe that South Korean courts, including the courts presiding over the
5 Korean Proceedings, would receive as evidence the information sought by Applicants. I
6 am not aware of any directive by South Korean courts that would preclude the use of the
7 requested materials.

8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10 Executed September 9, 2024, at Seoul, South Korea.

11 

12 _____
13 Jong-Uk Park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HIBIT 1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Plaintiffs 1. HYBE Co., Ltd.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3166546)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HYBE)
Representative Director: Ji-Won Park
2. BELIFT LAB Inc.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6873883)
14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HYBE)
Representative Director: Tae-Ho Kim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Defendant Name unknown
Addres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원 고 1. 주식회사 하이브 (법인등록번호:110111-316654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한강로3가, HYBE)
대표이사 박지원

2. 주식회사 빌리프랩(법인등록번호:110111-6873883)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4층 (한강로3가, HYBE)
대표이사 김태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피 고 성명불상자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하이브(이하 ‘원고 하이브’라고 합니다)는 2005. 2.경 설립된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2021. 3.경 사명을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하이브’로 변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주식회사 빌리프랩, 어도어, 쏘스뮤직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으며, 각 산하 레이블의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멀티레이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주식회사 하이브 등기사향전부증명서).

원고 주식회사 빌리프랩(이하 ‘원고 빌리프랩’이라 합니다)은 2018. 9. 17. 설립되어 음악·음반의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향전부증명서). 원고는 현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 (ILLIT)’이 있습니다.

피고 성명불상자(이하 ‘피고’라 합니다)¹는 구독자 수 약 4.99천명의 유튜브 채널인 ‘커여운토끼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속칭 ‘사이버 렉카’²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²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 하이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커여운 토끼장’(주소: <https://www.youtube.com/@토끼장>)에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여 원고 하이브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 및 모욕성 발언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피고는 2024. 5. 2. “방시혁, 언플 박자 꼬여서 딱걸림”이라는 제목의 영상³(이하 “2024. 5. 2.자 영상”)을 게시하면서 “벌써 법원에서 하이브는 사재기를 했다는 걸 인증해버렸어요. 판사님 앞에 저희 사재기 했습니다. 이렇게 인증해버렸다고”라는 내용의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사재기’란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 조작을 목적으로 특정 음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 하이브는 적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음원을 공개 및 유통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조작을 개입한 바 없습니다. 법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 사실 역시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하이브가 정당하게 이룩한 음악적 성과가 원고 하이브의 부정행위로 인한 것이고 심지어 원고 하이브가 이를 법원 절차에서 시인하였다는 취지의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 하이브의 명예와 신용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³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zd2Azy3Tbc>

2. 피고는 원고들을 모욕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수 차례 게시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 및 모욕성 발언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피고는 2024. 5. 2.자 영상에서 “하이브에서 기사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정신병원 진료를 추천드립니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2024. 6. 11.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빌리프랩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예요..”라는 제목의 영상⁴(이하 “2024. 6. 11.자 영상”)을 게시하면서 “침팬지가 만들어도 이거보단 논리적이겠구나란 생각이 들게 하더라구요”, “아이돌판에 손가락 얹은 개저씨들과 민희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개저씨들이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서 100만원 뜯어먹을까 고민”, (빌리프랩 대표 발언에 대해)와 “썹 이런 단어를 실제로 쓰는 사람 처음 봅니다”, “말투가 완전 개킹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업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빌리프랩은 이렇게 대표부터 직원들까지 공통적으로 언변이 진짜 안 좋습니다”, “퍼포먼스 디렉터 명상우님, 혹시 지능 낮으세요?”, “편집하는 사람이 침팬지이거나”, “김태호씨는 제가 볼 때 연예계 사업 말고 사설토토, 데이팅앱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적성에 맞아 보입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침팬지”, “개저씨”, “개킹”,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 “언변이 진짜 안 좋다”, “지능이 낮다”, “정신병원 진료를 추천한다”, “팬들에게서 100만원 뜯어먹을까 고민한다” 등의 표현은 원고 하이브와 원고 빌리프랩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위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⁴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1_BXmwkC0

3. 원고들은 피고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와 모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는 입장입니다.

피고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들을 모욕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소속사와 아티스트에 대한 대중의 호감, 인지도, 그리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합니다.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 사실 적시와 모욕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오랜 시간 구축하여 왔던 대중과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여, 원고들의 대외적 평판, 호감도, 인지도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으며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들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대중 간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고의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

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III.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허위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신용 및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의 허위 발언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반복 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러한 피고의 계속·반복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발언이 포함된 영상으로 인하여 원고 하이브와 원고 빌리프랩의 구성원들은 물론, 원고들의 소속 아티스트들까지 피해를 고스란히 받으며 인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하이브와 원고 빌리프랩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허위사실 및 모욕성 발언이 포함된 영상 목록

게시일	영상 제목(링크)	문제되는 내용
2024. 5. 2.	<u>방시혁, 언플 박자 꼬여서 딱 걸림</u>	- “벌써 법원에서 하이브는 사재기 했다는 것을 인증을 해버렸어요” “하이브에서 기사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정신병원 진료를 추천드립니다”
2024. 6. 11.	<u>빌리프랩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u>	- “침팬지가 만들어도 이거보다 논리적이겠구나란 생각이 들게 하더라구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걸스플래닛999 갤러리를 100% 지지한다’라는 문장으로 축약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돌판에 숟가락 없는 개저들과 민희진은 차원이 다릅니다”, “개저씨들이 어떻게 하면 팬들에게서 100만원 뜯어먹을까 고민”, (빌리프랩 대표 발언에 대해)“와 씹 이런 단어를 실제로 쓰는 사람 처음 봅니다”, “말투가 완전 개킹인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면 업무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빌리프랩은 이렇게 대표부터 직원들까지 공통적으로 언변이 진짜 안좋습니다”, “퍼포먼스 디렉터 명상우님, 혹시 지능 낮으세요?”, “편집하는 사람이 침팬지이거나”, “김태호씨는 제가 볼 때 연예계 사업 말고 사설토토, 데이팅앱을 추천드립니다... 그게 적성에 맞아 보입니다”

EXHIBIT 2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Plaintiffs

1. BELIFT LAB Inc.
Representative Director: Tae-Ho Kim
2. Yunah Roh
3. Minju Park
4. Moka Sakai
5. Wonhee Lee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Seung-Hun Lee [father] and Myung-Keun Lee [mother])
6. Iroha Hokazono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Ryuichi Hokazono [father] and Chihiro Hokazono [mother])

Address of Plaintiffs: 14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Defendant Name unknown
Addres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 원 고
1. 주식회사 빌리프랩
대표이사 김태호
 2. 노윤아
 3. 박민주
 4. 사카이 모카
 5. 이원희(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승훈, 모 박명근)
 6. 호카조노 이로하(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호카조노 류이치, 모 호카조노 치히로)
- 원고들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4층(한강로3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 고
- 성명불상자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빌리프랩(이하 ‘원고 빌리프랩’이라 합니다)은 2018. 9. 17. 설립되어 음악·음반의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갑 제1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는 현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ILLIT)이 있습니다.

원고 노윤아(활동명 ‘윤아’), 원고 박민주(활동명 ‘민주’), 원고 사카이 모카(활동명 ‘모카’), 원고 이원희(활동명 ‘원희’),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활동명 ‘이로하’, 이하 총칭하여 ‘원고 아일릿 멤버들’이라고 합니다)는 원고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의 멤버입니다.

피고 성명불상자(이하 ‘피고’라 합니다)¹는 구독자 수 약 3.14만명의 유튜브 채널인 ‘엔터픽’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속칭 ‘사이버 텍카’²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²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1. 적시된 허위사실

피고는 2024. 5. 6.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엔터픽’(주소: https://www.youtube.com/@EnterPick_Official)에 아일릿이 뉴진스 등 다른 아티스트나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를 표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총 8개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피고는 2024. 5. 6. “아일릿이 말하는 '뉴진스 - 어텐션' ㅋㅋ”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뉴진스의 ‘Attention’ 음원에 아일릿의 안무 영상을 짜깁기하여 영상 제목, 짜깁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 5. 14., 2024. 5. 27., 2024. 6. 11.(2건)자 영상도 마찬가지로 제목에 “표절”, “죄악”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아일릿의 안무, 컨셉, 노래 등이 뉴진스를 표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원고 빌리프랩은 2024. 6. 10. 유튜브에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바로 그 다음 날 허위사실이 포함된 두 건의 영상을 추가로 업로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악질적입니다.

나아가 2024. 5. 9., 2024. 5. 19.자 영상은 각 아일릿의 ‘럭키걸 신드롬’이 미국 록 밴드 The Wrecks의 ‘Favorite Liar’를, 아일릿의 ‘My World’가 Junior Senior의 ‘Move Your Feet’을 표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 5. 18.자 영상은 아

일릿의 원고 박민주가 뉴진스 해린의 ‘마름모 하트’를 표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는 최근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총 8건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2.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원고 빌리프랩은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를 영위해 온 기업으로, 2020년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ENHYPEN)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이하 ‘엔하이픈’이라 합니다). 엔하이픈 역시 아일릿과 마찬가지로 아이돌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아이랜드”(I-LAND)를 통해 멤버 선발을 거쳐 결성된 그룹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 선발을 위해 2020. 10.부터 “WWW Untact Audition”이라는 오디션을 진행하는 등 연습생을 모집하였고,³ 2023. 6. 30.부터 2023. 9. 1.까지 JTBC에서 방영된 “알유넥스트(R U NEXT?)”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인 데뷔 인원을 선별하였습니다(갑 제 2호증 원고 빌리프랩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원고 빌리프랩은 업계 내 경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과 원고 빌리프랩의 기획력 등을 토대로 상당 기간 준비하여 위와 같이 선별된 인원들을 “아일릿”으로 데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빌리프랩은 아일릿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방향성, 성장전략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컨셉을 구상하여 이를 실현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원고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³ 실제로 아일릿 데뷔멤버 중 원고 노윤아는 2019년부터,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 원고 박민주는 2020년부터 원고 빌리프랩의 연습생으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일릿과 같은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뷔시키기까지는 초기 투자 비용만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그룹들과 차별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이 수 년에 걸쳐 이와 같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피고 주장대로 소위 모방, 표절, 아류 표방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독히도 악의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 빌리프랩은 2024. 6. 10. 유튜브에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표절을 주장하는 아일릿의 ‘Lucky Girl Syndrome’은 Dance Pop 장르인 반면 The Wrecks의 ‘Favorite Liar’는 Alt Rock 장르로 노래의 장르부터 다르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일릿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표절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원고 박민주가 뉴진스 해린의 ‘마름모 하트’를 표절한 사실 역시 없습니다.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모함과 허위사실 적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걸그룹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는 입장입니다.

원고 아이릿 멤버들은 평균 나이가 1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데뷔한지 이제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인인데,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 렉카들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의 아류”, “카피”라는 꼬리표를 달고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비방과 욕설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인해 2007년생인 원고 이원희가 스케줄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아이릿 멤버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III.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허위의 내용인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제 싹을 틔워 꽃을 피워보려는 막 데뷔한 10대 소녀 아이돌 그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의 허위 발언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러한 피고의 계속·반복적인 명예훼손 발언이 포함된 영상은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하였던 원고 빌리프랩 임직원들은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던 원고 아일릿 멤버들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치열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부정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원고 빌리프랩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원고 아일릿 멤버들은 인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갓 데뷔한 어린 나이의 원고 아일릿 멤버들과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했던 원고 빌리프랩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갑 제2호증 원고 빌리프랩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3. 갑 제3호증 원고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4. 갑 제4호증 아일릿 멤버 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5. 갑 제5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뉴스 기사

첨 부 서 류

1. 별지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목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소송위임장

2024.08.3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HIBIT 3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 Plaintiffs
1. HYBE Co., Ltd.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3166546)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HYBE)
Representative Director: Ji-Won Park
 2. BELIFT LAB Inc.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6873883)
Representative Director: Tae-Ho Kim
 3. Yunah Roh
 4. Minju Park
 5. Moka Sakai
 6. Wonhee Lee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Seung-Hun Lee [father] and Myung-Keun Lee [mother])
 7. Iroha Hokazono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Ryuichi Hokazono [father] and Chihiro Hokazono [mother])
- Address of Plaintiffs 2 through 7: 14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 Defendants
1. Name unknown
 2. Name unknown
- Addresse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Each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s;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 원 고
1. 주식회사 하이브(법인등록번호:110111-316654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한강로3가, HYBE)
대표이사 박지원
 2. 주식회사 빌리프랩(법인등록번호:110111-6873883)
대표이사 김태호
 3. 노윤아
 4. 박민주
 5. 사카이 모카
 6. 이원희(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승훈, 모 박명근)
 7. 호카조노 이로하(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호카조노 류이치, 모 호카조노 치히로)
원고 2 내지 7의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4층 (한강로3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 고
1. 성명불상자 1
 2. 성명불상자 2
- 피고들 주소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하이브(이하 ‘원고 하이브’라고 합니다)는 2005. 2.경 설립된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2021. 3.경 사명을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하이브’로 변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주식회사 빌리프랩, 어도어, 쏘스뮤직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으며, 각 산하 레이블의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멀티레이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주식회사 하이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 주식회사 빌리프랩(이하 ‘원고 빌리프랩’이라 합니다)은 2018. 9. 17. 설립되어 음악·음반의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는 현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ILLIT)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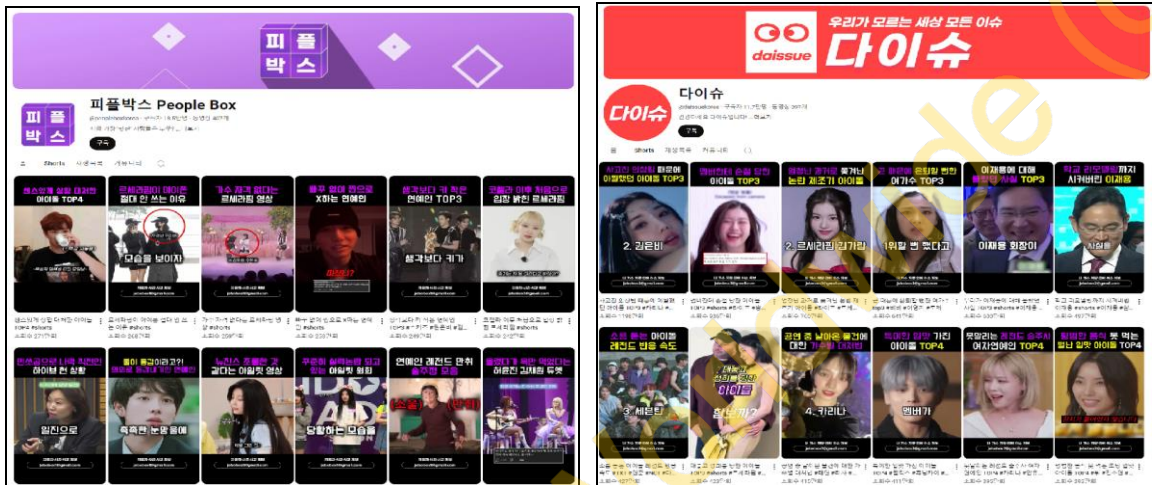
원고 노윤아(활동명 ‘윤아’), 원고 박민주(활동명 ‘민주’), 원고 사카이 모카(활동명 ‘모카’), 원고 이원희(활동명 ‘원희’),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활동명 ‘이로하’, 이하 총칭하여 ‘원고 아일릿 멤버들’이라고 합니다)는 원고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ILLIT)’의 멤버입니다.

피고 성명불상자 1¹은 구독자 수 약 18.5만명의 유튜브 채널인 ‘피플박스’(주소: <http://www.youtube.com/@peopleboxkorea>)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피고 성명불상자 2²은 구독자 수 약 11.7만명의 유튜브 채널인 ‘다이슈’(주소: <https://www.youtube.com/@daissuekorea>)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플박스, 다이슈 각 Shorts 검색 화면]



피고들은 속칭 ‘사이버 렉카’³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을 포함한 사이버 렉카들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높은 조회수, 인지도 등을 위하여 자극적 제목과 표현, 조롱, 모욕적 언행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유명인들의 약점을 잡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²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³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피고들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1. 적시된 허위사실

가. 피고 성명불상자 1

1) 빌리프랩, 아일릿에 대한 허위사실

피고 성명불상자 1은 2024. 5. 14.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에 ‘뉴진스 광고 안무까지 따라한 아일릿 ㄷㄷ’라는 제목으로 “(아일릿이) 뉴진스의 CM송 안무까지 따라했다, 너무 많은 컨셉과 안무 등등을 베껴서 다 셀 수 없을 정도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24. 5. 8.부터 2024. 6. 8.까지 “아일릿이 주식회사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뉴진스’를 표절하였다, 아일릿의 노래는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표절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 총 5개를 게시하였습니다.

2) 하이브에 대한 허위사실

피고 성명불상자 1은 2024. 5. 2.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에 ‘SM 인수 설레발 치다 망신당했던 하이브;’라는 제목으로 “하이브는 사실상 독립 레이블 운영이 아닌 그냥 방시혁 중심 레이블 운영인 것 같다, 방시혁 의장 마음대로 운영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고, 2024. 5. 11. ‘하이브 공주님 르세라핌VS콩쥐 뉴진스’라는 제목으로 “계모와 언니들은 하이브 임원 및 르세라핌, 콩쥐는 민희진과 뉴진스”, “데뷔 전부터 대우가 남달랐던 르세라핌, 뉴진스는 쇼케이스 없고” 등의 허위사실

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고, 2024. 5. 20. ‘에스파 밟고 싶어서 안달난 방시혁;;’이라는 제목으로 “하이브 방시혁 의장이 뉴진스에게 음반밀어내기를 지시하였다,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에게 음반밀어내기를 지시했으나 민희진이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나. 피고 성명불상자 2

1) 빌리프랩, 아일릿에 대한 허위사실

피고 성명불상자 2는 2024. 5. 16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다이슈’에 ‘경솔함이 하늘을 찌르는 아이돌’이라는 제목으로 “아일릿이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논란’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민지를 조롱하기 위해) ‘칼국수’를 반복적으로 외쳤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한 것을 포함하여, 2024. 5. 16.부터 2024. 5. 31.까지 “아일릿 민주가 뉴진스 해린의 ‘마름모 하트’를 표절하였다, 아일릿 원희의 허벅지 상처가 아토피, 지방흡입한 것이다”라는 등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 총 4개를 게시하였습니다.

2) 하이브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성명불상자 2는 2024. 5. 17.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다이슈’에 ‘연출 짜치는 하이브 모먼트 TOP4’라는 제목으로 “하이브가 꿈을 송양하는 친일 성향의 ‘단월드’와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2.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가. 빌리프랩, 아일릿 관련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원고 빌리프랩은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를 영위해 온 기업으로, 2020년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ENHYPEN)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이하 ‘엔하이픈’이라 합니다). 엔하이픈 역시 아일릿과 마찬가지로 아이돌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아이랜드”(I-LAND)를 통해 멤버 선발을 거쳐 결성된 그룹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 선발을 위해 2020. 10.부터 “WWW Untact Audition”이라는 오디션을 진행하는 등 연습생을 모집하였고,⁴ 2023. 6. 30.부터 2023. 9. 1.까지 JTBC에서 방영된 “알유넥스트(R U NEXT?)”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인 데뷔 인원을 선별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원고 빌리프랩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원고 빌리프랩은 업계 내 경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과 원고 빌리프랩의 기획력 등을 토대로 상당 기간 준비하여 위와 같이 선별된 인원들을 “아일릿”으로 데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빌리프랩은 아일릿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방향성, 성장전략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컨셉을 구상하여 이를 실현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원고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아일릿과 같은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뷔시키기까지는 초기 투자 비용만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그룹들과 차별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며,

⁴ 실제로 아일릿 데뷔멤버 중 원고 노윤아는 2019년부터,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 원고 박민주는 2020년부터 원고 빌리프랩의 연습생으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이 수 년에 걸쳐 이와 같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피고 성명불상자 1의 주장대로 소위 모방, 표절, 아류를 표방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독히도 악의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 빌리프랩은 2024. 6. 10. 유튜브에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표절을 주장하는 아일릿의 ‘Lucky Girl Syndrome’은 Dance Pop 장르인 반면 The Wrecks의 ‘Favorite Liar’는 Alt Rock 장르로 노래의 장르부터 다르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일릿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표절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원고 아일릿 멤버들 관련하여서도, 아일릿은 뉴진스 민지를 조롱하려고 ‘칼국수’를 반복해서 외친 사실이 없고, 원고 박민주가 뉴진스 해린의 ‘마름모 하트’를 표절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 이원희의 허벅지 상처는 연습 중 입은 부상일 뿐 아토피나 지방흡입으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나. 원고 하이브 관련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원고 하이브의 멀티레이블 체계는 하이브에서 IT, 시설, 인사, 재무, 홍보, 법무 등 각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하 레이블은 프로듀싱, 매니지먼트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구조를 갖고 있기에, 방시혁 의장 마음대로 운영된 사실이 없고, 원고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음반밀어내기’를 지시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단월드’와 전혀 관련이 없고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 소결

피고들 역시 이러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모함과 허위사실 적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III.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걸그룹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는 입장입니다.

원고 아이릿 멤버들은 평균 나이가 1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데뷔한지 이제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인인데, 피고들을 포함한 여러 사이버 렉카들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의 아류”, “카피”라는 꼬리표를 달고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비방과 욕설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인해 아이릿의 멤버 원희(2007년생)가 스케줄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아이릿 멤버 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각 피고에게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IV. 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허위의 내용인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제 짝을 띄워 꽃을 피워보려는 막 데뷔한 10대 소녀 아이돌 그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들의 허위 발언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러한 피고들의 계속·반복적인 명예훼손 발언이 포함된 영상은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하였던 원고 하이브 및 원고 빌리프랩 임직원들은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던 원고 아일릿 멤버들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치열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부정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원고 하이브 및 원고 빌리프랩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원고 아일릿 멤버들은 인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갓 데뷔한 어린 나이의 원고 아일릿 멤버들과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했던 원고 하이브 및 원고 빌리프랩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식회사 하이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원고 빌리프랩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4. 갑 제4호증 원고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5. 갑 제5호증 아일릿 멤버 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6. 갑 제6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뉴스 기사

첨 부 서 류

1. 별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하이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빌리프랩)
4. 소송위임장

2024.08.3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HIBIT 4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Plaintiffs

1. BELIFT LAB Inc.
Representative Director: Tae-Ho Kim
2. Yunah Roh
3. Minju Park
4. Moka Sakai
5. Wonhee Lee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Seung-Hun Lee [father] and Myung-Keun Lee [mother])
6. Iroha Hokazono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Ryuichi Hokazono [father] and Chihiro Hokazono [mother])

Address of Plaintiffs: 14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Defendant Name Unknown
Addres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 원 고
1. 주식회사 빌리프랩
대표이사 김태호
 2. 노윤아
 3. 박민주
 4. 사카이 모카
 5. 이원희(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승훈, 모 박명근)
 6. 호카조노 이로하(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호카조노 류이치, 모 호카조노 치히로)
- 원고들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4층(한강로3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 고
- 성명불상자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빌리프랩(이하 ‘원고 빌리프랩’이라 합니다)은 2018. 9. 17. 설립되어 음악·음반의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갑 제1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는 현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ILLIT)이 있습니다.

원고 노윤아(활동명 ‘윤아’), 원고 박민주(활동명 ‘민주’), 원고 사카이 모카(활동명 ‘모카’), 원고 이원희(활동명 ‘원희’),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활동명 ‘이로하’, 이하 총칭하여 ‘원고 아일릿 멤버들’이라고 합니다)는 원고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의 멤버입니다.

피고 성명불상자(이하 ‘피고’라 합니다)¹는 구독자 수 약 4만명의 유튜브 채널인 ‘뉴진스팸’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속칭 ‘사이버 텍카’²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²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1. 적시된 허위사실

피고는 2024. 5. 14.부터 현재까지³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뉴진스팸’(주소: <https://www.youtube.com/@newjeanspam>)에 아일릿이 뉴진스 등 다른 아티스트 또는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를 표절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반복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일례로, 피고는 2024. 5. 14. “뉴진스는 나야 둘이 될 순 없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였는데, “둘이 될 순 없어”라는 가사를 반복한 후에, 뉴진스와 아일릿 무대의 특정 부분을 교차 제시하고, 마지막에 민희진 대표가 2024. 4. 25. 경영권 분쟁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발언한 내용⁴(“신인 그룹에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을 추가하였습니다. 영상 제목, 편집 및 짜깁기 방식, 마지막 문구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24. 5. 25., 2024. 5. 29.자 영상에서도 뉴진스나 뉴진스를 연상시키는 영상과 함께, 각 “FAKE IT ‘TILL YOU MAKE IT(그 모습이 될 때까지 그런 ‘척’을 해라)”라는 문구를 게시하고 (아일릿의 영문 철자인) ‘ILL’과 ‘IT’을 별도로 강조하거나, 아일릿의 노래 ‘마그네틱’을 연속하여 게시하여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³ 현재는 해당 채널이 삭제되었지만, 기존 게시되었던 콘텐츠들은 증거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⁴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대표 민희진은 2024. 4. 25. 어도어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마치 뉴진스의 컨셉, 노래, 무대 등은 모두 자신의 기여로 탄생한 창작물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다수 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2024. 5.15., 2024. 5. 28., 2024. 6. 1.자 영상은 아일릿의 노래인 ‘럭키걸 신드롬’이 다른 노래(미국 록 밴드 The Wrecks의 'Favorite Liar')를 표절한 것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편집하고 “(...) 따라한거 아니에요” 등의 제목을 달아서, 아일릿의 노래가 다른 노래를 표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는 최근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총 7건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2.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

원고 빌리프랩은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를 영위해 온 기업으로, 2020년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ENHYPEN)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이하 ‘엔하이픈’이라 합니다). 엔하이픈 역시 아일릿과 마찬가지로 아이돌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아이랜드”(I-LAND)를 통해 멤버 선발을 거쳐 결성된 그룹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 선발을 위해 2020. 10.부터 “WWW Untact Audition”이라는 오디션을 진행하는 등 연습생을 모집하였고,⁵ 2023. 6. 30.부터 2023. 9. 1.까지 JTBC에서 방영된 “알유넥스트(R U NEXT?)”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인 데뷔 인원을 선별하였습니다(갑 제 2호증 원고 빌리프랩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⁵ 실제로 아일릿 데뷔멤버 중 원고 노윤아는 2019년부터,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 원고 박민주는 2020년부터 원고 빌리프랩의 연습생으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 빌리프랩은 업계 내 경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과 원고 빌리프랩의 기획력 등을 토대로 상당 기간 준비하여 위와 같이 선별된 인원들을 “아일릿”으로 데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빌리프랩은 아일릿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방향성, 성장전략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컨셉을 구상하여 이를 실현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원고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아일릿과 같은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뷔시키기까지는 초기 투자 비용만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그룹들과 차별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이 수 년에 걸쳐 위와 같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피고 주장대로 소위 모방, 표절, 아류 표방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독히도 악의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 빌리프랩은 2024. 6. 10. 유튜브에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피고가 표절을 주장하는 아일릿의 ‘Lucky Girl Syndrome’은 Dance Pop 장르인 반면 The Wrecks의 ‘Favorite Liar’는 Alt Rock 장르로 노래의 장르부터 다르다는 사실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아일릿은 다른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표절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모함과 허위사실 적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걸그룹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는 입장입니다.

원고 아일릿 멤버들은 평균 나이가 1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데뷔한지 이제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인인데,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 렉카들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의 아류”, “카피”라는 꼬리표를 달고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비방과 욕설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인해 2007년생인 원고 이원희가 스케줄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아일릿 멤버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III.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허위의 내용인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제 싹을 틔워 꽃을 피워보려는 막 데뷔한 10대 소녀 아이돌 그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의 허위 발언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반복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5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러한 피고의 계속·반복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영상은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하였던 원고 빌리프랩 임직원들은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던 원고 아일릿 멤버들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치열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부정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원고 빌리프랩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원고 아일릿 멤버들은 인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갓 데뷔한 어린 나이의 원고 아일릿 멤버들과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했던 원고 빌리프랩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갑 제2호증 원고 빌리프랩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3. 갑 제3호증 원고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4. 갑 제4호증 아일릿 멤버 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5. 갑 제5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뉴스 기사

첨 부 서 류

1. 별지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목록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3. 소송위임장

2024.08.3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HIBIT 5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Plaintiffs

1. HYBE Co., Ltd.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3166546)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HYBE)
Representative Director: Ji-Won Park
2. BELIFT LAB Inc.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6873883)
Representative Director: Tae-Ho Kim
3. Yunah Roh
4. Minju Park
5. Moka Sakai
6. Wonhee Lee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Seung-Hun Lee [father] and Myung-Keun Lee [mother])
7. Iroha Hokazono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Ryuichi Hokazono [father] and Chihiro Hokazono [mother])

Address of Plaintiffs 2 through 7: 14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Defendant Name unknown
Addres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 원 고
1. 주식회사 하이브 (법인등록번호:110111-316654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한강로3가, HYBE)
대표이사 박지원
 2. 주식회사 빌리프랩(법인등록번호:110111-6873883)
대표이사 김태호
 3. 노윤아
 4. 박민주
 5. 사카이 모카
 6. 이원희(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승훈, 모 박명근)
 7. 호카노조 이로하(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호카조노 류이치, 모 호카조노 치히로)
원고 2 내지 7의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4층 (한강로3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 고
- 성명불상자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하이브(이하 ‘원고 하이브’라고 합니다)는 2005. 2.경 설립된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2021. 3.경 사명을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하이브’로 변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주식회사 빌리프랩, 어도어, 쏘스뮤직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으며, 각 산하 레이블의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멀티레이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주식회사 하이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 주식회사 빌리프랩(이하 ‘원고 빌리프랩’이라 합니다)은 2018. 9. 17. 설립되어 음악·음반의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 빌리프랩은 현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ILLIT)’이 있습니다.

원고 노윤아(활동명 ‘윤아’), 원고 박민주(활동명 ‘민주’), 원고 사카이 모카(활동명 ‘모카’), 원고 이원희(활동명 ‘원희’),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활동명 ‘이로하’, 이하 총칭하여 ‘원고 아일릿 멤버들’이라고 합니다)는 원고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ILLIT)’의 멤버입니다.

피고 성명불상자(이하 ‘피고’라 합니다)¹는 구독자 수 약 9,890 여명의 유튜브 채널인 ‘왕짬이슈’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속칭 ‘사이버 텍카’²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현재 피고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지만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이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II.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가. 적시된 사실

피고는 2024. 3. 7.부터 현재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왕짬이슈’(주소: <https://www.youtube.com/@nowissue>)에 ① 아일릿이 뉴진스를 비롯한 다른 아티스트의 노래와 컨셉을 표절하였다, ② 아일릿이 뉴진스를 음해하려 한다, ③ 원고 하이브 및 원고 빌리프랩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총 12개를 반복적으로 업로드하였습니다.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²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아일릿이 뉴진스 등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하였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의 적시

피고는 2024. 3. 7., 2024. 5. 11., 2024. 5. 14. 각각 “하이브 신인 뉴진스랑 똑같은데”(이하 “2024. 3. 7.자 영상”),³ “아일릿 또 또 따라한거야??”,⁴ “뉴진스 안무 팀이 아일릿 복붙 그만해달라”⁵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흡쳤다**”, “**따라했다**”, “**베꼈다**”, “**복붙**”, “**그냥 ctrl-c ctrl-v**”, “**진짜 비슷하다**”, “**이렇게 흡사하게 따라하다니**”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아일릿이 뉴진스의 노래, 안무, 컨셉 등을 표절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피고는 2024. 3. 7.자 영상에서는 “하이브 신인 뉴진스랑 똑같은데”, “하이브 새로운 여돌! 너무 뉴진스 시즌2”, “회사에서 대놓고 바이럴 마케팅을 노리고 이렇게 찍은걸까 의심이 되는데”라고 하면서 원고 하이브가 표절을 주도하였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4. 6. 11. “벨리프랩 반박 영상 네티즌 의문제기? 앙따정”이라는 제목으로 “타들은 포즈 비슷한 걸 캡처한 건데 아일릿은 진짜 똑 같은 거 같다는 의견이 있다”고 하여 원고 벨리프랩의 반박은 허술하고, 아일릿이 표절한 것이 맞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⁶

³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rwcfQSbTtL0>

⁴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72s6nliQu4E>

⁵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cJWz_YHBdX8

⁶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2PeVPc0KQrM>

2) 원고 빌리프랩 및 아일릿이 뉴진스를 음해하려 한다는 구체적 허위 사실의 적시

피고는 2024. 5. 15. “칼국수 발언은 뉴진스 흠집내기?”라는 제목으로 아일릿이 자체 콘텐츠에서 의도적으로 뉴진스가 과거 논란이 발생하여 사과문까지 올린 적이 있던 ‘칼국수’ 발언을 언급하여, 뉴진스를 흠집내려 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⁷ 특히, “같은 소속사끼리 이렇게 문제가 되었던 일은 의도적으로라도 피하는 것이 엔터계의 상식인데, 2개월 전 아일릿의 콘텐츠에서는 칼국수라는 단어의 언급이 여러 번 되어 음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음모론이 돌고 있다”, “제작은 빌리프랩이라던데 칼국수 부분은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을까?”, (자막) “칼국수는 억까다? 맥이려는 의도다? 아일릿 칼국수 수차례 언급”이라는 설명과 자막을 게재하면서 원고 빌리프랩과 아일릿이 뉴진스를 음해하고 흠집내려 했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3) 원고 하이브 및 원고 빌리프랩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구체적 허위 사실의 적시

피고는 또한 2024. 4. 23.,⁸ 2024. 5. 16.,⁹ 2024. 6. 5.¹⁰ 각각 “애한테 왜 이런 옷을 입혀!?”, “뉴진스 증오? 아일릿 데리고 언플하는 것 같다”(이하 “2024. 5. 16.자 영상”), “원희 댓글 알바 들켰다는 소문”(이하 “2024. 6. 5.자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 원고 하이브 및 원고 빌리프랩이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⁷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3D8OwZX9kKY>

⁸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fAIsNaycmGg>

⁹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NwcGxmxduDo>

¹⁰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Fs4_EI53vY8

구체적으로, 피고는 2024. 5. 16.자 영상에서 “누가 봐도 연출한 그림이고 기사도 주문한 것 같다”, “하이브는 아일릿도 방패막이로만 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원고 이원희가 위버스 생방송 중 휴대폰에서 악플을 삭제하는 장면이 하이브가 연출한 장면이라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 6. 5.자 영상에서는 원고 이원희의 포카리스웨트 광고 티저 영상의 댓글에 댓글봇으로 의심되는 댓글들이 삭제된 후 다시 동일한 영상이 업로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일릿 측에서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가 들켰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고는 2024. 5. 24. “민희진 때문에 아픈 원희?”라는 제목으로 민희진의 표절 주장으로 악플에 시달린 원고 이원희가 병원에 갔다는 내용의 기사의 논조를 비난하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영상에서 “기사의 논조가 결국은 민희진에 대한 공격이고 아일릿 원희가 아픈 것도 민희진 때문이라는 부분에서 욕을 먹었다”, “표절이건 아니건 회사에서 시키는 컨셉이었고”, “그간의 행적을 미루어보았을 때 아일릿도 1년 6개월 휴가 갔다와라는 의견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아일릿 측이 위 기사를 통해 여론을 조작한다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하였습니다.¹¹

이렇듯 피고는 최근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총 12건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별지] 허위사실 및 모욕성 발언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¹¹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zdQuINLxBmU>

나. 피고가 적시한 사실은 모두 허위입니다.

1) 아일럿이 뉴진스 등 다른 아티스트를 표절하였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은 2018년부터 연예기획사를 영위해 온 기업으로, 2020년에는 남자 아이돌 그룹 “엔하이픈”(ENHYPEN)을 성공적으로 데뷔시킨 경험이 있습니다(이하 ‘엔하이픈’이라 합니다). 엔하이픈 역시 아일럿과 마찬가지로 아이돌 리얼리티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아이랜드”(I-LAND)를 통해 멤버 선발을 거쳐 결성된 그룹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여자 아이돌 그룹의 멤버 선발을 위해 2020. 10.부터 “WWW Untact Audition”이라는 오디션을 진행하는 등 연습생을 모집하였고,¹² 2023. 6. 30.부터 2023. 9. 1.까지 JTBC에서 방영된 “알유넥스트(R U NEXT?)”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적인 데뷔 인원을 선별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원고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원고 빌리프랩은 업계 내 경력과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들과 원고 빌리프랩의 기획력 등을 토대로 상당 기간 준비하여 위와 같이 선별된 인원들을 “아일럿”으로 데뷔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 빌리프랩은 아일럿이라는 아이돌 그룹의 방향성, 성장전략 등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그 컨셉을 구상하여 이를 실현하였습니다(갑 제4호증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¹² 실제로 아일럿 데뷔멤버 중 원고 노윤아는 2019년부터,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 원고 박민주는 2020년부터 원고 빌리프랩의 연습생으로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일릿과 같은 아이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데뷔시키기까지는 초기 투자 비용만 수백억 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현존하는 그룹들과 차별화하고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과정이며, 이를 위해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협업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노력과 많은 시간을 들여 새로운 아이돌 그룹을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원고 빌리프랩이 수 년에 걸쳐 이와 같이 대단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피고 주장대로 소위 모방, 표절, 아류물 표방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지독히도 악의적인 주장입니다. 또한 원고 빌리프랩은 2024. 6. 10. 유튜브에 “표절 주장에 대한 빌리프랩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하며 아일릿은 뉴진스를 표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피고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모함과 허위사실 적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원고 빌리프랩 및 아일릿이 뉴진스를 흠집내려 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아일릿의 ‘칼국수’ 언급 장면은 엠넷에서 아일릿 데뷔쇼 영상으로 제작된 내용에서 발췌된 것으로, 해당 영상의 진행과 편집은 모두 엠넷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눈 덮힌 산장에서의 하루, 아일릿 멤버들의 소중한 힐링의 시간”라는 제목의 영상¹³(이하 “2024. 7. 29.

¹³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8mpG4ZfuMo>

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원본 영상”)으로 아일릿 멤버들이 두 가지 음식 중 에서 자신이 더 선호하는 것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고르는 ‘음식 월드컵’ 게임을 하면서 ‘칼국수 vs 갈비찜’ 중 칼국수를 선택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칼국수 외에도 ‘김밥 vs 마라탕’, ‘육회 vs 빙수’, ‘냉면 vs 막창’, ‘김치찌개 vs 국밥’, ‘카레 vs 삼겹살’, ‘초밥 vs 떡볶이’, ‘라면 vs 스테이크’, ‘간장게장 vs 피자’ 등 수많은 음식이 언급되었으며 아일릿의 음식 이상형은 최종적으로 ‘라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국수가 언급된 것은 해당 영상에서 언급된 다른 음식의 종류, 양태, 대중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혀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멤버는 “애들아 갈비찜이지”, “내 갈비찜이 여기서 떨어지다니”라고 말하는 등 실제 멤버들이 각자의 선호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황이었고, 의도적으로 ‘칼국수’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뉴진스의 ‘칼국수’ 발언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는 점은 해당 영상을 직접 보기만 해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24. 7. 29.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원본 영상 캡처 화면]





해당 프로그램은 엠넷이 제작한 영상이므로 원고 빌리프랩의 연출이라는 주장 자체가 허위 사실이고, 아일럿이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발언을 조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칼국수’를 언급했다는 주장 또한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3) 원고 하이브 및 원고 빌리프랩이 여론을 조작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피고의 2024. 5. 16.자 영상과 관련하여, 원고 이원희가 위버스 생방송 중 휴대폰에서 악플을 삭제하는 장면을 원고 하이브가 연출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피고의 2024. 6. 5.자 영상과 관련하여, 원고 이원희가 포카리스웨트 광고 영상과 관련하여 댓글봇을 사용하여 댓글을 작성한 사실 또한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적시한 위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2. 피고는 원고들을 모욕하였습니다.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원고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영상을 수차례 게시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 및 모욕성 발언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피고는 2024. 3. 7. “하이브 신인 뉴진스랑 똑같은데”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다들 뉴진스 2냐 뉴진스 대만판이냐고 말을 하는데.. 진짜 비슷하다”,¹⁴ 2024. 5. 11. “아일릿 또 또 따라한거야??”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진짜 짹짹쓰야 컨셉 왜이래 아일릿 또 따라했다 vs 억까다”,¹⁵ 2024. 5. 29. “아일릿, 과잠 리폼 진짜 별로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진짜 안예쁘고 괴상한 리폼, 아일릿 연세대 과잠 화제”¹⁶라는 표현을 게재하였습니다.

“짹짹쓰”란 “뉴진스”와 가짜나 모조품을 속되게 이르는 단어인 “짹”을 결합하여 아일릿이 뉴진스를 모방하였다는 취지로 조롱하고 비난하는 표현입니다. “짜통”이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조롱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이 여러 판례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16. 선고 2022노2497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20고정40 판결).

‘가짜’나 ‘모조품’이라는 의미로 인격체에 “짹짹쓰”, “뉴진스 2”, “뉴진스 대만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3. 원고들은 피고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들을 모욕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걸그

¹⁴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rwcfQSbTtL0>

¹⁵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72s6nliQu4E>

¹⁶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NSBPTbV-2U0>

룹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을 한 것은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는 입장입니다.

원고 아일릿 멤버들은 평균나이가 1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데뷔한지 이제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인인데,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 렉카들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해 “뉴진스의 아류”, “카피”라는 꼬리표를 달고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게 되어 명예훼손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위와 같은 비방과 욕설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컨디션 난조로 인해 2007년생인 원고 이원희가 스케줄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갑 제5호증 아일릿 멤버 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

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III.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허위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신용 및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제 싹을 틔워 꽃을 피워보려는 막 데뷔한 10대 소녀 아이돌 그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의 허위 발언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반복 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6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러한 피고의 계속·반복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명예훼손 및 모욕 발언이 포함된 영상은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하였던 원고 하이브와 원고 빌리프랩 임직원들은 물론, 오디션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며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던 원고 아일릿 멤버들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그 치열한 준비 과정을 철저히 부정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원고 하이브와 원고 빌리프랩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원고 아일릿 멤버들은 인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제 갓 데뷔한 어린 나이의 원고 아일릿 멤버들과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했던 원고 하이브와 원고 빌리프랩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주식회사 하이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갑 제2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갑 제3호증 원고 빌리프랩 오디션 및 알유넥스트 포스터
4. 갑 제4호증 원고 빌리프랩 데뷔조 걸그룹 방향성_0920
5. 갑 제5호증 아일릿 멤버 원희 컨디션 난조로 인한 스케줄 불참 관련 기사
6. 갑 제6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뉴스 기사

첨 부 서 류

1. 별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하이브)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빌리프랩)
4. 소송위임장

2024.08.30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서부지방법원 귀중

EXHIBIT 6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Plaintiffs

1. HYBE Co., Ltd.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3166546)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HYBE)
Representative Director: Ji-Won Park
2. BELIFT LAB Inc. (Corporate Registration No. 110111-6873883)
Representative Director: Tae-Ho Kim
3. Yunah Roh
4. Minju Park
5. Moka Sakai
6. Wonhee Lee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Seung-Hun Lee [father] and Myung-Keun Lee [mother])
7. Iroha Hokazono (Ryuichi Hokazono [father] and Chihiro Hokazono
[mother])

Address of Plaintiffs 2 through 7: 14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Defendant Name unknown
Addres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 원 고
1. 주식회사 하이브(법인등록번호:110111-3166546)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한강로3가, HYBE)
대표이사 박지원
 2. 주식회사 빌리프랩(법인등록번호:110111-6873883)
대표이사 김태호
 3. 노윤아
 4. 박민주
 5. 사카이 모카
 6. 이원희(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승훈, 모 박명근)
 7. 호카조노 이로하(부 호카조노 류이치, 모 호카조노 치히로)
원고 2 내지 7의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4층 (한강로3가, HYBE)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 피 고
- 성명불상자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하이브(이하 ‘원고 하이브’라고 합니다)는 2005. 2.경 설립된 주식회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2021. 3.경 사명을 현재와 같이 ‘주식회사 하이브’로 변경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주식회사 빌리프랩, 어도어, 쏘스뮤직 등 다수의 연예기획사를 산하 레이블로 두고 있으며, 각 산하 레이블의 크리에이티브 활동을 지원하는 등 멀티레이블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갑 제1호증 주식회사 하이브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 주식회사 빌리프랩(이하 ‘원고 빌리프랩’이라 합니다)은 2018. 9. 17. 설립되어 음악·음반의 제작, 연예인 매니지먼트 대행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입니다(갑 제2호증 주식회사 빌리프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 빌리프랩은 현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아일릿’(ILLIT)이 있습니다.

원고 노윤아(활동명 ‘윤아’), 원고 박민주(활동명 ‘민주’), 원고 사카이 모카(활동명 ‘모카’), 원고 이원희(활동명 ‘원희’),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활동명 ‘이로하’, 이하 총칭하여 ‘원고 아일릿 멤버들’이라고 합니다)는 원고 빌리프랩 소속 아이돌 그룹 ‘아일릿(ILLIT)’의 멤버입니다.

피고 성명불상자(이하 ‘피고’라 합니다)¹는 구독자 수 약 1,500명의 유튜브 채널인 ‘이슈탄’(주소: https://www.youtube.com/@issue_tan)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는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속칭 ‘사이버 렉카’²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II.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1. 피고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가. 원고 빌리프랩, 아일릿에 대한 2024. 7. 31.자 허위사실 적시

피고는 2024. 7. 31.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이슈탄’에 “뉴진스 외면한 아일릿 아이브에겐 90도인사;”라는 제목의 영상(이하 “2024. 7. 31.자 영상”)을 게시하면서, 아일릿이 뉴진스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인사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아일릿이 2024. 7. 21.자 ‘2024 SBS 가요대전 Summer’의 엔딩 무대에서 뉴진스를 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과, 아일릿이 아이브가 있는 방향으로 인사를 하는 장면을 마치 아일릿이 뉴진스를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처럼 보이게끔 악의적으로 편집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영상에서 “뉴진스와 아일릿의 관계는 어떨까 관심이 많은데 이번 가요대전 엔딩 때 아일릿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일릿 갑자기 뉴진스를 마주치자 못 본척 눈길을 주지 않고 외면해 지나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라 해도 적어도 인사 안 하고 외면하는 건 좀 아닌 듯 싶다”라는 자막과 나레이션을 게재하였

²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습니다. 해당 영상은 2024. 7. 31. 게재된 이후 2024. 8. 29. 기준으로 조회수 약 440만 회를 기록하며 빠르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2024. 7. 31.자 영상 캡처 자료]



그러나, 이는 명백한 허위입니다. 피고가 2024. 7. 31.자 영상에서 짜깁기한 원본 영상은 2024. 7. 21.자 '2024 SBS 가요대전 Summer'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들이 무대 위 가장자리 부근을 돌면서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자리로 마련된 엔딩

무대의 7분 31초 분량의 직캠(fancam) 영상³(이하 “2024. 7. 31.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원본 영상”)입니다.

피고가 ‘아일릿이 뉴진스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악의적으로 편집한 부분은 원고 사카이 모카가 정면을 응시하면서 지나가는 장면인데, 해당 장면은 전체 7분 31초 분량의 원본 영상 중 단 3초(1:36~1:38)라는 찰나의 순간을 슬로우모션으로 편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엔딩 무대는 ‘2024 SBS 가요대전 Summer’에 참석한 아이돌 그룹들이 무대 외곽을 일렬로 돌면서 무대 아래에 위치한 팬들을 향해서 인사를 건네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기에 아이돌 그룹 간에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된 장면에서 아일릿과 뉴진스는 2m 가량 떨어져서 각자 반대 방향으로 지나가면서 각자 팬들을 바라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즉, 해당 장면은 아일릿이 뉴진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모카는 문제된 장면 직전(1:33~1:35)에 무대 아래의 팬들을 바라 보며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후 모카의 뒤쪽으로 뉴진스 멤버들이 반대 방향으로 지나갔고, 모카는 원래 진행하던 방향으로 시선을 옮기며 이동하였습니다. 결국 모카가 뉴진스를 인지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비상식적이고 지독한 억측이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³ <https://www.youtube.com/watch?v=26ixdOs0IPM>

[2024. 7. 31.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원본 영상 캡처 화면]





오히려, 다른 위치에서 촬영된 직캠 영상⁴을 보면(이하 “2024. 7. 31.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다른 영상”), 피고가 편집한 장면 이외의 장면(3:41~3:43)에서 원고 호카조노 이로하가 실제로 뉴진스 다니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아일럿이 뉴진스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인사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⁴ <https://www.youtube.com/watch?v=KtlGcFTYUYg>

[2024. 7. 31.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다른 영상 캡처 화면]



피고 역시 해당 무대 엔딩이 아이돌 그룹 간 인사하는 자리가 아니라 무대 외
곽을 돌면서 무대 밖에 있는 팬들을 향한 인사를 하는 자리였고 문제된 장면
에서는 아일럿이 뉴진스에게 인사를 건넬 수 있는 상황 자체가 아니었으며, 실
제로 아일럿이 뉴진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초의 찰나의 순간을 느린 속도로 편집하고,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자극적인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면서 아일릿 멤버들의 인성(인사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아일릿에 대한 근거 없는 모함과 허위사실 적시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악질적이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나. 원고 빌리프랩, 아일릿에 대한 2024. 7. 29.자 허위사실 적시

또한, 피고는 2024. 7. 29. “뉴진스 부모님에 이은, 아일릿 부모님 심정? ㄷㄷ”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이하 “2024. 7. 29.자 영상”), 아일릿이 한 방송에서 ‘칼국수’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장면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아일릿이 뉴진스 민지의 ‘칼국수 논란’⁵을 알면서 뉴진스 민지를 조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칼국수’를 반복적으로 외쳤다는 사실을 암시하였습니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⁵ 2023년 초경 뉴진스 멤버 중 한명인 민지가 유튜브 채널 '침착맨' 라이브 방송에서 칼국수 관련 이야기가 나오자 "칼국수가 뭐지?"라는 혼잣말을 한 것을 두고 일부 네티즌들이 불편한 반응을 보였으며 해당 논란이 1년 가까이 지속되자, 올해 초 진행된 라이브 방송에서 재차 민지가 "여러분 제가 칼국수를 모르겠어요? 두 번 생각해보세요.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 여러분은 칼국수의 종류, 재료 다 알고 계세요?" 라고 대응한 사안에서, 말투 관련 태도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결국 사과문("지난 2일 버니즈분들과 소통하는 라이브에서 저의 말투와 태도가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 "버니즈분들과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소통하는 라이브에서 좋지 못한 태도를 보여드린 것 같아 놀라고 상처받으셨을 버니즈분들께 정말 죄송하다")까지 올렸던 사건을 의미합니다.

[2024. 7. 29.자 영상 캡처 화면]



피고가 2024. 7. 29.자 영상에서 제시한 아일릿의 ‘칼국수’ 언급 장면은 엠넷에서 아일릿 데뷔쇼 영상으로 제작된 내용에서 발췌된 것으로, 해당 영상의 진행과 편집은 모두 엠넷에서 진행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눈 덮힌 산장에서의 하루, 아일릿 멤버들의 소중한 힐링의 시간”라는 제목의 영상⁶(이하 “2024. 7. 29.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원본 영상”)으로 아일릿 멤버들이 두 가지 음식 중에서 자신이 더 선호하는 것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고르는 ‘음식 월드컵’ 게임을 하면서 ‘칼국수 vs 갈비찜’ 중 칼국수를 선택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는 칼국수 외에도 ‘김밥 vs 마라탕’, ‘육회 vs 빙수’, ‘냉면 vs 막창’, ‘김치찌개 vs 국밥’, ‘카레 vs 삼겹살’, ‘초밥 vs 떡볶이’, ‘라면 vs 스테이크’, ‘간장게장 vs 피자’ 등 수많은 음식이 언급되었으며 아일릿의 음식 이상형은 최종적으로 ‘라면’이 선정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칼국수가 언급된 것은 해당 영상에서 언급된 다른 음식의 종류, 양태, 대중성을 고려하였을 때 전혀 이질

⁶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K8mpG4ZfuMo>

적이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일부 멤버는 “애들아 갈비찜이지”, “내 갈비찜이 여기서 떨어지다니”라고 말하는 등 실제 멤버들이 각자의 선호를 솔직하고 자유롭게 표현하는 상황이었고, 의도적으로 ‘칼국수’를 특별히 강조하거나 뉴진스의 ‘칼국수’ 발언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은 전혀 없었다는 점은 해당 영상을 직접 보기만 해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2024. 7. 29.자 허위사실 적시 관련 원본 영상 캡처 화면]



아일럿이 뉴진스 민지를 조롱하려는 목적으로 ‘칼국수’를 반복해서 외친 사실이 없다는 점에서 피고가 2024. 7. 29.자 영상에서 민지를 의도적으로 조롱한 것처럼 암시한 사실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다. 원고 하이브에 대한 2024. 7. 3.자 허위사실 적시

피고는 2024. 7. 3. “고양이땀 위버스콘 야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이하 “2024. 7. 3.자 영상”), “너호흡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라는 자막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위버스콘의 주체인 원고 하이브가 ‘단월드’와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암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하이브는 ‘단월드’나 사이버종교나 사이버 단체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피고가 2024. 7. 3.자 영상에서 적시한 사실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라. 원고 하이브에 대한 2024. 7. 26.자 허위사실 적시

피고는 2024. 7. 26. “뉴진스 연습생 디스패치 영상 폭로 반응”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하면서(이하 “2024. 7. 26.자 영상”), “혹시 미국으로 뜨는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돌고 있다”, “혹시 해외 출국하는 건 아니겠쥬??”, “하이브 임원진들 미국에 집 다 한 채씩 사놓고 한 명씩 토끼러”, “덕분에 하이브 주가는 1년 4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이라는 자막과 나레이션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는 원고 하이브의 임원진들이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하이브의 임원진들이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도피하려고 한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피고가 2024. 7. 26.자 영상에서 적시한 사실은 명백히 허위입니다.

마. 소결

이와 같이 피고는 2024. 7. 3.부터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총 4건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피고 역시 이러한 적시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해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극적이고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 및 구독자 수를 늘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근거 없는 모함과 허위 사실 적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였습니다. 특히, 걸그룹과 그 소속사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은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

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는 입장입니다.

특히, 원고 아일릿 멤버들은 평균 나이가 18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이고, 데뷔한지 이제 몇 달 밖에 되지 않은 신인인데, 피고를 포함한 여러 사이버 렉카들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인해 대중으로부터 극심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 7. 31. 자 영상에서는 “아일릿 짜친다”, “짜가지 없다”, “인성까지 파탄났다”는 가혹한 댓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 7. 31.자 영상 댓글 캡처 자료]



@발랑당좋아 7 days ago

짹하고 찐의 품위 차이일까? 짹 진짜 짜친다 ㅋㅋㅋ

👍 590 🗨️ Reply

▼ 12 replies



@user-yr2tk5vo5o 4 days ago

저 단공주 재는 진짜 짜가지없는 것 같음ㅋㅋㅋ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것 만으로도..

👍 4 🗨️ Reply

▼ 1 reply



@user-ij5xn8mj8l 2 days ago

아일릿 처리게 짜가지없음

👍 4 🗨️ Reply



@user-xf5ig2ig7f 8 days ago

실력도 파탄 났는데 인성까지 파탄남? 진짜 왜저러고 삶?

👍 92 🗨️ Reply

✓ 2 replies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III.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허위 내용의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신용 및 인격권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이제 싹을 틔워 꽃을 피워보려는 막 데뷔한 10대

소녀 아이돌 그룹과 그 소속사, 그리고 대중의 신뢰를 쌓아 왔던 엔터테인먼트사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반복 재생산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3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에 이제 갓 데뷔한 어린 나이의 원고 아일릿 멤버들과 아일릿의 데뷔를 위해 노력했던 원고 빌리프랩, 그리고 원고 하이브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 목록

게시일	영상 제목(링크)	문제되는 내용
2024. 7. 31.	<u>뉴진스 외면한 아일릿 아이브에 겐 90도인사::</u>	- “뉴진스와 아일릿의 관계는 어떨까 관심이 많은데 이번 가요대전 엔딩 때 아일릿 태도가 화제가 되고 있다.”, “아일릿 갑자기 뉴진스를 마주치자 못 본척 눈길을 주지 않고 외면해 지나가는데”, “마음에 들지 않는 선배라 해도 적어도 인사 안 하고 외면하는 건 좀 아닌 듯 싶다.”
2024. 7. 29.	<u>뉴진스 부모님에 이은,아일릿 부 모님 심정</u>	- 아일릿이 한 방송에서 ‘칼국수’를 반복적으로 외치는 장면 제시
2024. 7. 26.	<u>뉴진스 연습생 디스패치 영상 폭로 반응</u>	- “(이타카 홀딩스를)1조원이나 주고 사서 뭐하냐... 하이브 무능 저격”, “혹시 미국으로 뜨는거 아니냐는 의혹까지 들고 있다”, “혹시 해외출국하는건 아니겠쥬??”, “하이브 임원진들 미국에 집 다 한채씩 사놓고 한명씩 토끼려”
2024. 7. 3.	<u>고양이땀 위버스 콘 약유</u>	- “뇌호흡하면 기분이 나아질거예요”

EXHIBIT 7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Plaintiffs

1. SOURCE MUSIC Co., Ltd.
Representative Director: Joo-Young Kim
2. Sakura Miyawaki
3. Chaewon Kim
4. Yunjin Jennifer Huh
5. Kazuha Nakamura

Address of Plaintiffs 1 through 5: 16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6. Eunhae Hong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Seong-Min Hong [father] and Eun-Ju Kim [mother])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Tel.: 82-2-3703-1253 / Mobile: 82-10-6235-**** / Email: jwpark@kimchang.com)

Defendant Name unknown
Addres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원 고 1. 주식회사 쏘스뮤직
대표이사 김주영
2. 미야와키 사쿠라
3. 김채원
4. 제니퍼 윤진 허
5. 나카무라 카즈하
원고 1 내지 5의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6층(한강로3가)
6. 홍은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성민, 모 김은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한강로3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전화: 02-3703-1253 휴대전화: 010-6235-****
이메일: jwpark@kimchang.com)

피 고 성명불상자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쏘스뮤직(이하 '원고 쏘스뮤직'이라 합니다)은 2009년 소성진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로서, 주식회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있습니다(갑 제1호 증 주식회사 쏘스뮤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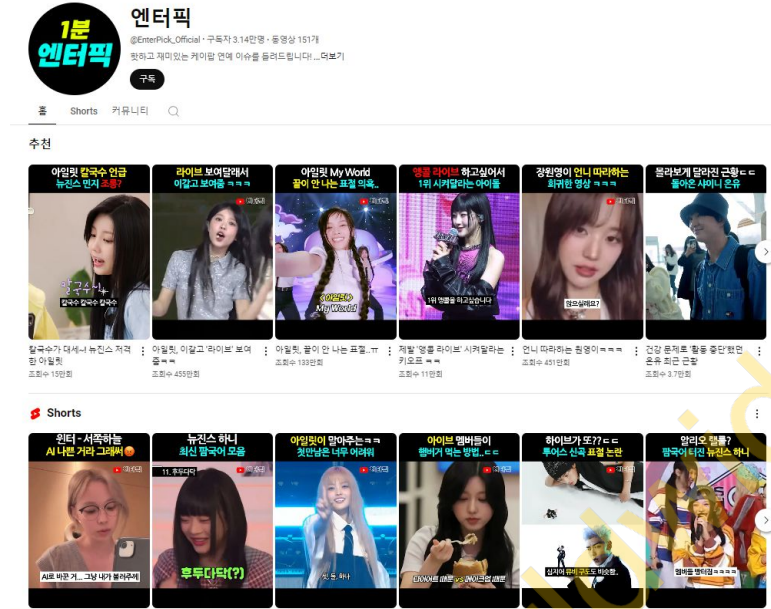
원고 미야와키 사쿠라(활동명 '사쿠라'), 원고 김채원(활동명 '김채원'), 원고 제니퍼 윤진 허(활동명 '허윤진'),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활동명 '카즈하'), 원고 홍은채(활동명 '홍은채')는 쏘스뮤직 소속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입니다(이하 원고 미야와키 사쿠라, 원고 김채원, 원고 제니퍼 윤진 허,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 원고 홍은채를 '원고 르세라핌'이라고 합니다).

피고 성명불상자(이하 '피고'라 합니다)¹는 구독자 수 약 3.14만명의 유튜브 채널인 '엔터픽'(주소: https://www.youtube.com/@EnterPick_Official)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엔터픽 Shorts 검색 화면]



피고는 속칭 ‘사이버 텍카’²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피고를 포함한 사이버 텍카들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수익과 직결되는 높은 조회수, 인지도 등을 위하여 자극적 제목과 표현, 조롱, 모욕적 언행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유명인들의 약점을 잡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는 최근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총 12건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 및 모욕성 발언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²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피고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1. 원고 르세라핌, 원고 쏘스뮤직이 단월드, 친일 성향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엔터픽’에 ① 2024. 5. 2. ‘소름 돋는 단월드 관점 ‘르세라핌’ 뮤비 해석’라는 제목으로 “악마에게 구원받는 확실한 이단적 모습 하이브가 르세라핌을 앞세워 단월드의 교리를 전파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고, ② 2024. 5. 4. ‘알고보니 친일? 소름돋는 ‘르세라핌 뮤비’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일장기 등장”, “친일파의 조력”, “태극기 상징 깨부수고 일본인 사쿠라가 웃음” 등 원고 르세라핌이 친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영상을 게시하였고, ③ 2024. 5. 16. ‘한복입고 춤추는 뉴진스’라는 제목으로 “친일 논란이 있었던 르세라핌 설날에도 한복 안 입기로 유명” 등의 허위사실과, 원고 르세라핌에 일본 멤버가 있어 마치 친일 사상의 영향으로 한복을 거부하는 것처럼 편집한 영상을 게시하였고, ④ 2024. 7. 7. ‘르세라핌 최근 광고가 또 일본????’이라는 제목으로 “친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르세라핌” 등의 허위사실과, 원고 르세라핌이 단순히 일본 브랜드와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 일본이냐, 르세라핌이 단체로 찍는 건 노린거다”라는 등 원고 르세라핌이 친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르세라핌, 원고 쏘스뮤직은 단월드나 친일 성향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월드의 교리나 친일 성향을 표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적시한 위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각 명예훼손적 내용이 포함된 영상 캡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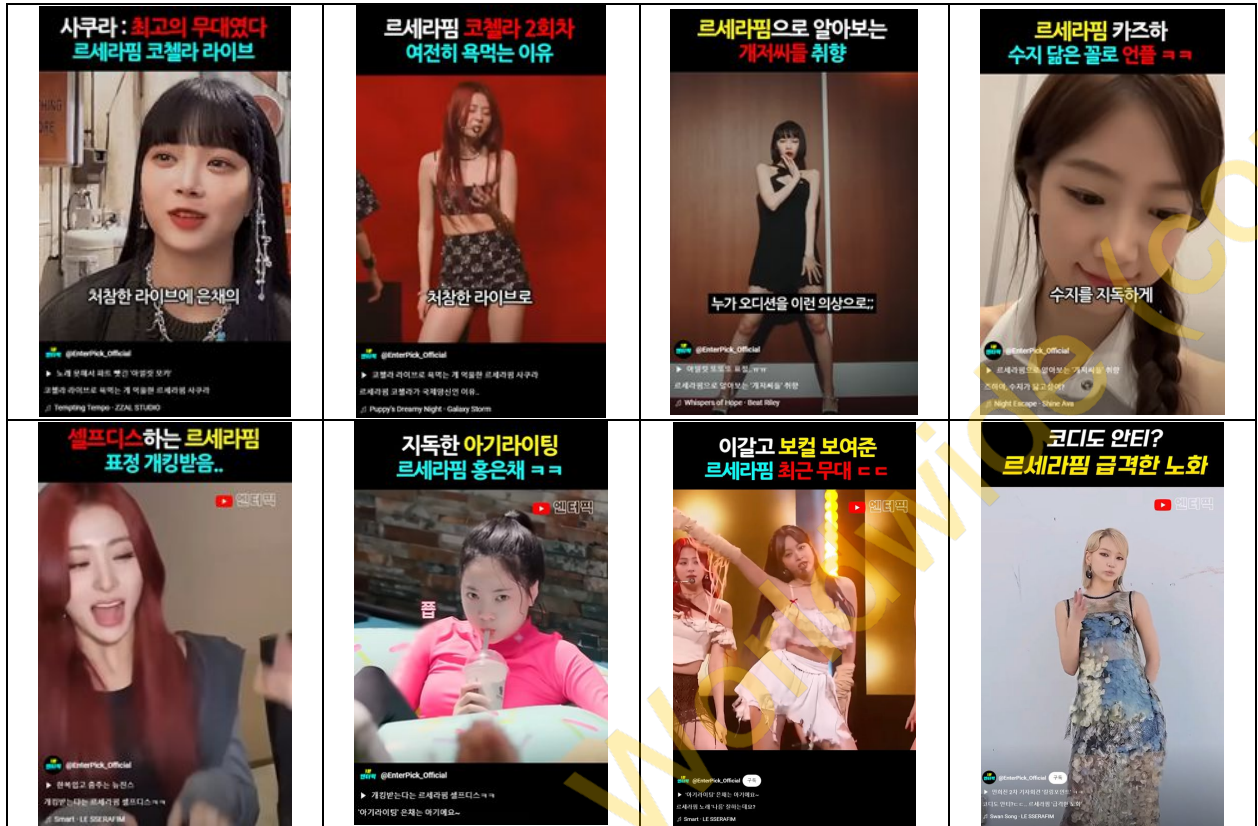


2. 원고 르세라핌에 대한 모욕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엔터픽'에 ① 2024. 4. 16. '코첼라 라이브로 욕먹는 게 억울한 르세라핌 사쿠라'라는 제목으로 "처참한 라이브"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르세라핌의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조롱하고, "학교다니시죠 여러분??ㅎㅎ 힘들겠다~"라는 원고 홍은채의 과거 발언에 대해 '고3들을 약올리는 발언'이라고 표현하는 등 원고 홍은채가 연예인병에 걸려 친구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 홍은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② 2024. 4. 22. '르세라핌 코첼라가 국제망신인 이유..'라는 제목으로 "르세라핌 코첼라 2회차 여전히 욕먹는 이유", "얼마 전 첫 번째 코첼라에서 처참한 라이브로 비판을 받았다 과연 두 번째 무대는 괜찮았을까? 저번보다는 나아졌지만 ar이라는 게 티가 나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르세라핌의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조롱하는 등 원고 르세라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③ 2024. 5. 12. '르세라핌으로 알아보는 '개저씨들' 취향'

이라는 제목으로 “르세라핌으로 알아보는 개저씨들 취향 누가 오디션을 이런 의상으로;; 더 심각한 꾸라 의상”, “개저씨들 취향 확고함;; 굳이 올라타는 장면 넣고 하반신 포커스 줘 개저씨들은 망사를 좋아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르세라핌이 어린 여성들을 성상품화하는 중년 남성들의 취향이 반영되어 있는, 시대에 뒤떨어진 수동적인 여성상을 그린 이미지라는 인식을 유도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④ 2024. 5. 12. ‘즈하야, 수지가 닳고싶어?’라는 제목으로 “수지를 지독하게 닳고싶은 르세라핌 카즈하 이두나 챌린지를 하기도 하고 이번 팬미팅에서 대놓고 수지인 척을 했다”, “이렇게 두고 보니까 하나도 안 닳은 듯..”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가 연예인 수지씨를 닳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흉내내는 것처럼 묘사하고 시청자로 하여금 거부감을 일으키도록 하고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⑤ 2024 5. 17. ‘개킹받는다는 르세라핌 셀프디스크’라는 제목으로 원고 르세라핌이 자체 컨텐츠에서 멤버들끼리 장난을 치며 노는 장면에 대해 “개킹받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이를 악의적으로 묘사한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⑥ 2024. 5. 21. ‘“아기라이팅’ 은채는 아기에요~’이라는 제목으로 “재 어떡하니 저 애기~”, “만채는 넘어져도 울지 않지”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홍은채가 마치 유아퇴행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묘사하여 원고 홍은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⑦ 2024. 5. 22. ‘르세라핌 노래 ‘나름’ 잘하는데요?’라는 제목으로 “이같고 보컬을 보여준 최근 무대”, “르세라핌이 노래를 ‘나름’ 잘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원고 르세라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고, ⑧ 2024. 6. 2. ‘코디도 안티?ㄷㄷ.. 르세라핌 ‘급격한 노화’라는 제목으로 원고 르세라핌 멤버들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 주며 “급격한 노화”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노출하여 원고 르세라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각 모욕 영상 캡처 자료]



IV.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들을 모욕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걸그룹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피고가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을 한 것은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관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고 하였습니다.

피고의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V. 결론

위와 같이 피고는 허위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며,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

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중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아이돌 그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대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이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실로 막심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의 허위 발언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무분별하게 반복 재생산 되며 손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러한 피고의 계속·반복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발언이 포함된 영상은 원고 르세라핌의 데뷔를 위해 노력하였던 원고 쏘스뮤직 임직원들은 물론, 아티스트라는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고 현재도 노력 중인 원고 르세라핌 멤버들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앨범 제작과 공연을 위하여 땀흘려 보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철저히 부정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고 쏘스뮤직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원고 르세라핌 멤버들은 현재 인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르세라핌과 원고 르세라핌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 노력 중인 원고 쏘스뮤직은 더 이상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HIBIT 8

Music Business Worldwide (copy)

[Translation]

COMPLAINT

Plaintiffs

1. SOURCE MUSIC Co., Ltd.
Representative Director: Joo-Young Kim
2. Sakura Miyawaki
3. Chaewon Kim
4. Yunjin Jennifer Huh
5. Kazuha Nakamura

Address of Plaintiffs 1 through 5: 16th Fl.,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6. Eunhae Hong (a minor; legal representatives/parental right holders: Seong-Min Hong [father] and Eun-Ju Kim [mother])
42, Hangang-daero, Yongsan-gu, Seoul (Hangangno 3-ga)

Legal Counsel for Plaintiffs
Attorney-at-Law Jong-Uk Park
39, Sajik-ro 8-gil, Jongno-gu, Seoul (Naeja-dong)
(Tel.: 82-2-3703-1253 / Mobile: 82-10-6235-**** / Email: jwpark@kimchang.com)

Defendants

1. Name unknown
2. Name unknown

Addresses unknown

Claim for Damages (*Gi*)

PRAYER FOR RELIEF

Plaintiffs respectfully request that this Court enter a judgment stating that:

1. Each Defendant shall pay to each Plaintiff KRW 20,000,000 plus interest accrued thereon at the rate of 12% per annum from the day following the service date of a copy of this Complaint until the date of payment in full;
2.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Defendants; and
3. Paragraph 1. above may be provisionally executed.

소 장

원 고 1. 주식회사 쏘스뮤직
대표이사 김주영
2. 미야와키 사쿠라
3. 김채원
4. 제니퍼 윤진 허
5. 나카무라 카즈하
원고 1 내지 5의 주소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16층(한강로3가)
6. 홍은채(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홍성민, 모 김은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2, (한강로3가)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욱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39 (내자동)
(전화: 02-3703-1253 휴대전화: 010-6235-****
이메일: jwpark@kimchang.com)

피 고 1. 성명불상자
2. 성명불상자
피고들 주소 주소불명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I.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쏘스뮤직(이하 ‘쏘스뮤직’이라 합니다)은 2009년 소성진이 설립한 연예기획사로서, 주식회사 하이브 산하의 레이블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속 아티스트로서 5인조 아이돌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주식회사 쏘스뮤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고 미야와키 사쿠라(활동명 ‘사쿠라’), 원고 김채원(활동명 ‘김채원’), 원고 제니퍼 윤진 허(활동명 ‘허윤진’),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활동명 ‘카즈하’), 원고 홍은채(활동명 ‘홍은채’)는 쏘스뮤직 소속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입니다(이하 원고 미야와키 사쿠라, 원고 김채원, 원고 제니퍼 윤진 허,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 원고 홍은채를 ‘원고 르세라핌’이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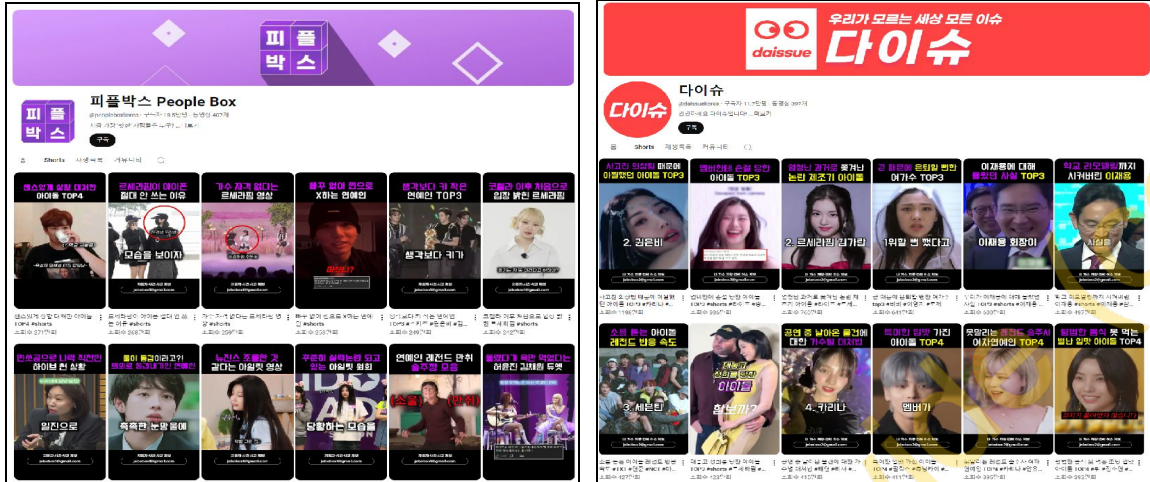
피고 성명불상자 1¹은 구독자 수 약 18.5만명의 유튜브 채널인 ‘피플박스’(주소: <http://www.youtube.com/@peopleboxkorea>)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성명불상자 2²은 구독자 수 약 11.7만명의 유튜브 채널인 ‘다이슈’(주소: <http://www.youtube.com/@daissuekorea>)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¹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² 추후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통해서 피고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는 대로 보완하겠습니다.

[피플박스, 다이슈 각 Shorts 검색 화면]



피고들은 속칭 ‘사이버 텍카’³라고 불리는 이슈 전문 유튜버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원고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모욕성 발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피고들을 포함한 사이버 텍카들은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연예인, 정치인, 운동선수 등 유명인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자신의 수익과 직결되는 높은 조회수, 인지도 등을 위하여 자극적 제목과 표현, 조롱, 모욕적 언행은 물론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유명인들의 약점을 잡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하는 등 매우 악질적인 행위를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듯 피고들은 최근까지 계속·반복적으로 허위사실로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발언이나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별지] 허위사실 및 모욕성 발언이 포함된 영상 목록 참조).

³ 인터넷 상에서 연예, 사회, 문화, 정치, 유명인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가 된 각종 사건 사고들을 짜깁기한 영상이나 글, 또는 이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영상을 즉각적으로 올리는 것을 주요 콘텐츠로 하여 이익(조회수, 인지도, 광고 수익 등)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II. 피고들의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원고들의 명예훼손 및 모욕

1. 피고 성명불상자 1

가. 원고 르세라핌, 원고 쏘스뮤직이 단월드, 친일 성향과 관련 있다는 허위사실 유포

피고 성명불상자 1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에 ① 2024. 4. 30. ‘여자친구가 단월드와 얽이고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쏘스뮤직의 소속 아이돌 그룹인)여자친구가 단월드 교리에 따라 해체되었고, 르세라핌이 단월드 교리에 따라 ‘천사’ 역할로 데뷔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고, ② 2024. 5. 3. ‘왜색논란 휘말렸다는 르세라핌 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Burn the Bridge’ 뮤비, 트래일러 영상 흰 바닥에 피 이미지, 일본어 나레이션, 사쿠라가 물에 떠있는 화면이 독도를 연상시킨다”, “코첼라에서도 일장기 스크린으로 한국 그룹인줄 몰랐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등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⁴을 게시하였고, ③ 2024. 6. 5. ‘한국 뜰 준비하나 싶은 르세라핌 근황’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포기한 것 같다는 르세라핌 함볼까”,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피가 나와 친일 논란부터, 사이비 단월드까지” 등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⁵을 게시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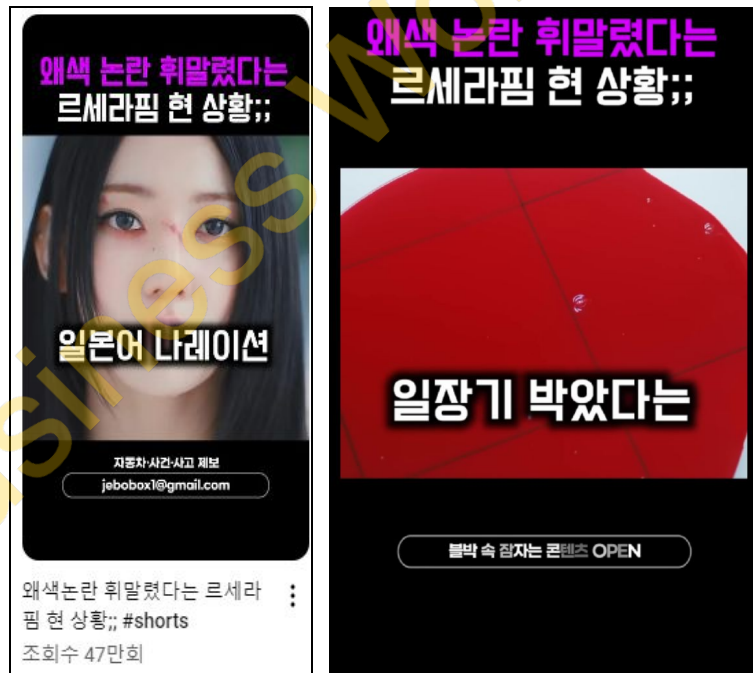
⁴ 현재 영상을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⁵ 현재 영상을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2024. 4. 30.자 명예훼손 영상 캡처 자료]



[2024. 5. 3.자 명예훼손 영상 캡처 자료]



[2024. 6. 5.자 명예훼손 영상 캡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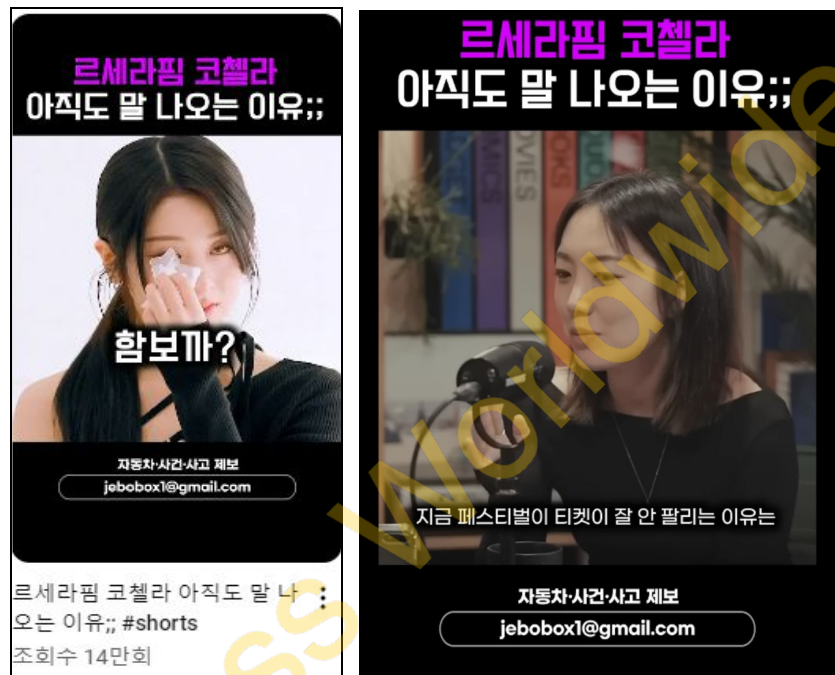
그러나 원고 르세라핌, 원고 쏘스뮤직은 단월드나 친일 성향과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월드의 교리나 친일 성향을 표현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 성명불상자 1이 적시한 위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피고들은 이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나. 원고 르세라핌에 대하여 코첼라 이수정 총감독이 원고 르세라핌의 실력을 혹평했다는 허위사실 유포

피고 성명불상자 1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에 2024. 6. 9. ‘르세라핌 코첼라 아직도 말 나오는 이유;;’이라는 제목으로 “코첼라 끝난 지 1달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거론되는 르세라핌”, “당시 ‘영망인 라이브’로 뉴스에 보도될 정도.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 다시 말이 나왔다”, “(DMZ 피스트레인 이

수정 총감독의 발언)지금 페스티벌 티켓이 잘 안 팔리는 이유는, 공연이 좋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아티스트가 많다. 섭외비가 어마어마하다” 등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⁶을 게시하였습니다.

[2024. 6. 9.자 명예훼손 영상 캡처 자료]



그러나 이수정 총감독의 발언은 음악 페스티벌 업계 전체에 대한 것이고 원고 르세라핌을 겨냥하여 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 성명불상자 1이 적시한 위 사실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⁶ 현재 영상을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다. 원고 르세라핌에 대한 모욕

피고 성명불상자 1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피플박스’에 ① 2024. 3. 28. ‘라이브 안 하려고 꼼수 쓰는 아이돌’이라는 제목으로 “얼마 전 실력 논란으로 떠들썩했던 르세라핌, 특별히 앵콜 라이브를 피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떼창으로 실력 감추기”, “어우... 노래 어찌면 좋아... 1위할 때 실력 점수도 넣어줘라”, “리코더 연주로 자기 파트 피하는 거라고” 등 원고 르세라핌의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조롱하는 등 원고 르세라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⁷을 게시하였고, ② 2024. 3. 29. ‘연예인 됐다고 기고만장해진 아이돌’이라는 제목으로 “연예인병 걸린 것 같다는 아이돌 함 볼까”, “최근 또래 친구들을 놀리는 듯한 발언을 해 문제가 되었던 홍은채” 등 원고 홍은채가 연예인병에 걸려 친구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취지로 원고 홍은채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⁸을 게시하였고, ③ 2024. 4. 22. ‘일본인 아이돌 멤버의 극과 극 실력 차이’라는 제목으로 “사쿠라는 언제 잘함? 데뷔 10년 넘었잖아”, “그냥 발레하세요” 등 원고 미야와키 사쿠라와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의 노래 실력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조롱하는 등 원고 미야와키 사쿠라와 원고 나카무라 카즈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⁹을 게시하였고, ④ 2024. 4. 24. ‘데뷔 전 자기 실력 언급해버린 르세라핌’이라는 제목으로 “(홍은채)코첼라에서 최악의 라이브 정점 찍었다”, “(사쿠라)음치 논란에 여러 번 휘말렸던 사쿠라, 아무리 연습해도 열소 목소리는 힘든 듯”, “(카즈하)데뷔 2년차인데 아직도 라이브가 부족” 등 원고 르세라핌의 라이브 실력을 조롱하여 원고 르세라

⁷ 게시글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9oHroVMlq0s?app=desktop>

⁸ 게시글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Sj2gLMDKsQU?app=desktop>

⁹ 게시글 주소: <https://www.youtube.com/shorts/aQzo3p0OLAs>

핍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¹⁰을 게시하였고, ⑤ 2024. 5. 15. ‘또 논란 터졌다는 르세라핍 현 상황’이라는 제목으로 “의도적으로 노래 안 부르는 것 같다는 르세라핍”, “코첼라에서 완전 정점을 찍더니 이제는 영망진창 라이브하면 바로 생각나는 대명사가 돼버렸다고” 등 원고 르세라핍의 라이브 실력을 조롱하여 원고 르세라핍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¹¹을 게시하였고, ⑥ 2024. 5. 18. ‘올렸다가 욕만 먹었다는 허윤진·김채원 듀엣’이라는 제목으로 “실력 보여주려다가 된통 당했다는 르세라핍”, “어떻게 데뷔한건지 말 많은 상황”, “가만히 있었음 조용히 묻혔을 일을 사쿠라, 김채원이 대중이랑 기 싸움한 덕에 르세라핍 이미지는 완전 만신창이가 됨”, “그나마 보컬 멤버인 김채원, 허윤진 영상을 공개했지만 그마저 반응 최악이라고 한다” 등 원고 르세라핍의 라이브 실력을 조롱하여 원고 르세라핍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내용의 영상¹²을 게시하였습니다.

<이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¹⁰ 현재 영상을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¹¹ 현재 영상을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¹² 현재 영상을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각 모욕 영상 캡처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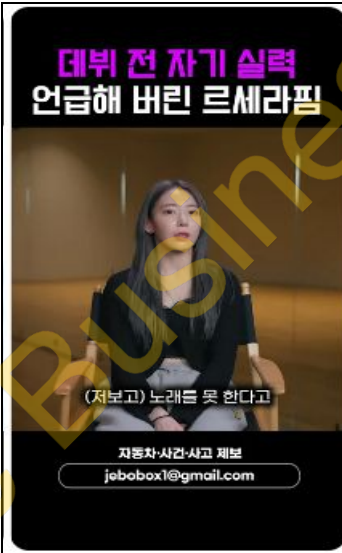
라이브 안 하려고 꼼수 쓰는 아 :
이들 #shorts
조회수 485만회



연예인 됐다고 기고만장해진 :
아이돌 #shorts
조회수 225만회



일본인 아이돌 멤버의 극과 극 :
실력 차이 #shorts
조회수 197만회



데뷔 전 자기 실력 언급해 버린 :
르세라핌 #shorts
조회수 177만회



또 논란 터졌다는 르세라핌 현 :
상황 #shorts
조회수 206만회



올렸다가 욕만 먹었다는 허윤 :
진 김채원 듀엣 #shorts
조회수 226만회

2. 피고 성명불상자 2

피고 성명불상자 2는 2024. 3. 10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다이슈’에 ‘표절 의혹으로 논란된 아이돌 TOP3’라는 제목으로 “앨범이 나올 때마다 표절로 논란된 르세라핌”, “이번 앨범에서도 3곡이 표절 논란”, “유명한 곡을 너무 노골적으로 표절한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영상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 르세라핌은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표절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2024. 3. 10.자 명예훼손 영상 캡처 자료]



또한 피고 성명불상자 2는 2024. 6. 6 ‘걸그룹 라이브 실력 절망편 vs 희망편’이라는 제목으로 “코첼라에서 라이브 대참사를 보여줬다는 홍은채”, “속트를 창법이라는 단어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등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함으로써 원고 르세라핌 및 원고 쏘스뮤직을 모욕하였습니다.

[2024. 6. 6.자 모욕 영상 캡처 자료]



IV. 원고들의 손해와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피고들은 모두가 볼 수 있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원고들을 모욕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특히, 걸그룹에 대한 호감과 인지도가 활동의 기초가 되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원고들이 입는 손해는 막심하고 피고들이 위와 같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을 한 것은 원고들의 원활한 업무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재산 이외의 손해는 정신상의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 수량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나 사회통념상 금전 평가가 가능한 무형의 손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

한 자는 그 법인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53146 판결 등 참조), 기업이 사회적 평가의 침해에 따라 입게 되는 무형의 손해는 손해의 종류와 성격, 지명도와 영업의 신용도, 규모와 영업실적, 불법행위에서 허위성과 비방성의 강도, 악의성의 정도, 소비자의 특성, 회복의 곤란함 등을 참작하여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3다40614, 40621 판결의 취지 참조)고 하였습니다.

피고들의 명예훼손 행위와 모욕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이미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었습니다만, 재산상 손해를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손해배상의 일부청구로서 명예훼손 및 모욕에 따른 위자료로 각 2천만원의 지급을 구합니다.

나아가 판례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증명 곤란 등의 이유로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 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본 건 또한 마찬가지로, 원고들의 명성과 이미지 훼손 및 사업 기회 손실 등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등의 사정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산정에 참작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V. 결론

위와 같이 피고들은 허위이고 모욕적인 내용의 영상을 통하여 원고들의 명예와 신용을 중대하게 훼손하고, 이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의 수익원과 홍보 기회로 삼는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대중들의 즐거움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는 아이돌 그룹을 자신의 사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상 대중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아이돌 그룹이 이와 같은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입는 손해는 실로 막심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인터넷에서 피고들의 허위 발언과 그에 기초한 동조 주장이 무분별하게 반복 재생산되며 손해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거세지면서, 검찰 또한 사이버 렉카라고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기로 하는 등 엄정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사이버 렉카 문제의 중대성 관련 KBS 뉴스 기사).

이러한 피고들의 계속·반복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발언이 포함된 영상은 원고 르세라핌의 데뷔를 위해 노력하였던 원고 쏘스뮤직 임직원들은 물론, 아티스트라는 꿈을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노력하였고 현재도 노력 중인 원고 르세라핌 멤버들의 모든 노력과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들고 앨범 제작과 공연을 위하여 땀흘려 보냈던 그 모든 과정들을 철저히 부정하며 무시하는 것입니다. 원고 쏘스뮤직과 그 구성원들, 그리고 원고 르세라핌 멤버들은 현재 인내하기 어려운 심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원고 르세라핌과 원고 르세라핌의 매니지먼트 활동을 위하여 물심양면 노력 중인 원고 쏘스뮤직은 더 이상의 피해를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시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Timothy B. Yoo - State Bar No. 254332
 tyoo@birdmarella.com
 2 Ray S. Seilie - State Bar No. 277747
 rseilie@birdmarella.com
 3 BIRD, MARELLA, RHOW,
 LINCENBERG, DROOKS & NESSIM, LLP
 4 1875 Century Park East, 23rd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67-2561
 5 Telephone: (310) 201-2100
 Facsimile: (310) 201-2110
 6
 7 Attorneys for HYBE Co., Ltd.; BELIFT LAB
 Inc.; and SOURCE MUSIC Co., Ltd.

8
 9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10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SAN JOSE DIVISION**

11 Case No. 3:24-mc-80228

12 *In re Ex Parte* Application of HYBE Co.,
 13 Ltd., BELIFT LAB Inc., and SOURCE
 14 MUSIC Co., Ltd.

**Declaration of Wook Ki Lee in Support
 of HYBE Co., Ltd.'s, BELIFT LAB
 Inc.'s, and SOURCE MUSIC Co., Ltd.'s
 Ex Parte Application for Order
 Authorizing Discovery for Use in
 Foreign Proceedings Pursuant to 28
 U.S.C. § 1782**

1 alleging, among other things, that ILLIT, a female K-pop group managed by BELIFT
2 LAB, plagiarized their content from other artists, and that LE SSERAFIM, another female
3 K-pop group managed by SOURCE MUSIC, has been taking specific covert actions to
4 mask their singing abilities from the general public. In particular, the YouTube channels
5 “Cute Rabbit Jjang,” “EnterPick,” “People Box,” “Da Issue,” “NewJeansFam,” “Issue
6 Tan,” and “Wangjam Issue” (collectively, the “YouTube Channels”) all include videos that
7 make or propagate false and damaging claims against Applicants. While I do not know
8 how this campaign began, it has now taken a life of its own, with multiple YouTube
9 channels propagating these false and defamatory claims without any supporting evidence.
10 The specific statements at issue are too numerous to list here, but are set forth in detail in
11 the formal Korean civil complaints, which I understand are attached as Exhibits 1 through
12 8 to Jong-Uk Park’s declaration.

13 6. Given the nature of Applicants’ business, these defamatory YouTube videos
14 have damaged Applicants’ business and reputation. Applicants retained Jong-Uk Park to
15 initiate civil litigation in the Korean courts to recover damages from the publishers of these
16 videos. To that end, it is my understanding that eight civil complaints were filed on August
17 30, 2024.

18 7. Neither I nor, on information and belief, anyone else working on behalf of
19 Applicants have been able to determine the identities of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20 publishing defamatory content on the YouTube Channels. It is my understanding that,
21 without that information, Applicants will be unable to obtain relief from a Korean court. It
22 is thus my understanding that Applicants need the identities of the individuals responsible
23 for publishing defamatory content on the YouTube Channels to proceed with the Korean
24 civil cases.

25 8. Applicants do not intend to use any information obtained through this
26 proceeding for any purpose other than for use in the Korean litigation matters.

27 I declare under penalty of perjury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28 that the foregoing is true and correct.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Executed September 9, 2024, at Seoul, South Korea.

Wook Ki Lee

Wook Ki Lee

1 Timothy B. Yoo - State Bar No. 254332
tyoo@birdmarella.com
2 Ray S. Seilie - State Bar No. 277747
rseilie@birdmarella.com
3 BIRD, MARELLA, RHOW,
LINCENBERG, DROOKS & NESSIM, LLP
4 1875 Century Park East, 23rd Floor
Los Angeles, California 90067-2561
5 Telephone: (310) 201-2100
Facsimile: (310) 201-2110

6 Attorneys for HYBE Co., Ltd.; BELIFT
7 LAB, Inc.; and SOURCE MUSIC Co. Ltd.

8
9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10 **CENTRAL DISTRICT OF CALIFORNIA, WESTERN DIVISION**

11
12
13 In Re *Ex Parte* Application of
14 HYBE Co., Ltd.; BELIFT LAB, Inc.;
15 and SOURCE MUSIC Co. Ltd.

CASE NO. 3:24-mc-80228

**[Proposed] Order Granting
Applicant's *Ex Parte* Application for
an Order Pursuant to 28 U.S.C. §
1782**

Concurrently Filed With:

- (1) *Ex Parte* Application
- (2) Declaration of Jong-Uk Park;
- (2) Declaration of Wook Ki Lee;
- (3) Proposed Subpoena

[PROPOSED] ORDER

This matter comes before the Court on the Applicant’s *Ex Parte* Application for an Order Pursuant to 28 U.S.C. § 1782, authorizing limited discovery for use in civil litig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Court, having fully considered the Application, and good cause appearing, hereby GRANTS the Application.

IT IS HEREBY ORDERED that:

1. The Applicant is authorized to issue and serve Google LLC the proposed subpoena attached to the Application.
2. The Applicant’s counsel must serve a copy of this Order and all papers upon which the Application was based together with the subpoena.
3. Google LLC shall respond to the subpoena and produce information relevant to the subpoena within (14) days of the service of subpoena and as required under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Local Rules of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4. The Court hereby retains jurisdiction over this matter.

IT IS SO ORDERED.

DATED:

CIVIL COVER SHEET

The JS-CAND 44 civil cover sheet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neither replace nor supplement the filing and service of pleadings or other papers as required by law, except as provided by local rules of court. This form, approved in its original form by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1974, is required for the Clerk of Court to initiate the civil docket sheet. (SEE INSTRUCTIONS ON NEXT PAGE OF THIS FORM.)

I. (a) PLAINTIFFS

In re Ex Parte Application of HYBE Co., Ltd.; BELIFT LAB Inc., and SOURCE MUSIC Co., Ltd.

(b) County of Residence of First Listed Plaintiff (EXCEPT IN U.S. PLAINTIFF CASES)

(c) Attorneys (Firm Nam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Timothy B. Yoo; Ray S. Seilie; Bird, Marella, Rhow, Lincenberg, Drooms & Nessim, LLP, 1875 Century Park East, 23rd Floor, Los Angeles, CA 90067; Ph: 310-201-2100

DEFENDANTS

County of Residence of First Listed Defendant (IN U.S. PLAINTIFF CASES ONLY)

NOTE: IN LAND CONDEMNATION CASES, USE THE LOCATION OF THE TRACT OF LAND INVOLVED.

Attorneys (If Known)

II. BASIS OF JURISDICTION (Place an "X" in One Box Only)

- 1 U.S. Government Plaintiff
2 U.S. Government Defendant
3 Federal Question (U.S. Government Not a Party)
4 Diversity (Indicate Citizenship of Parties in Item III)

III. CITIZENSHIP OF PRINCIPAL PARTIES (Place an "X" in One Box for Plaintiff and One Box for Defendant)

Table with columns for Plaintiff (PTF) and Defendant (DEF) citizenship: Citizen of This State, Citizen of Another State, Citizen or Subject of a Foreign Country, Incorporated or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This State, Incorporated and Principal Place of Business In Another State, Foreign Nation.

IV. NATURE OF SUIT (Place an "X" in One Box Only)

Large table with categories: CONTRACT, REAL PROPERTY, TORTS, CIVIL RIGHTS, PRISONER PETITIONS, HABEAS CORPUS, FORFEITURE/PENALTY, LABOR, IMMIGRATION, BANKRUPTCY, SOCIAL SECURITY, FEDERAL TAX SUITS, OTHER STATUTES.

V. ORIGIN (Place an "X" in One Box Only)

- 1 Original Proceeding
2 Removed from State Court
3 Remanded from Appellate Court
4 Reinstated or Reopened
5 Transferred from Another District (specify)
6 Multidistrict Litigation-Transfer
8 Multidistrict Litigation-Direct File

VI. CAUSE OF ACTION

Cite the U.S. Civil Statute under which you are filing (Do not cite jurisdictional statutes unless diversity): 28 U.S.C. Section 1782

Brief description of cause:

Application authorizing limited discovery for use in civil litigation matter in the Republic of Korea

VII. REQUESTED IN COMPLAINT:

CHECK IF THIS IS A CLASS ACTION UNDER RULE 23, Fed. R. Civ. P. DEMAND \$

CHECK YES only if demanded in complaint: JURY DEMAND: Yes No

VIII. RELATED CASE(S), IF ANY (See instructions):

JUDGE

DOCKET NUMBER

IX. DIVISIONAL ASSIGNMENT (Civil Local Rule 3-2)

(Place an "X" in One Box Only)

X SAN FRANCISCO/OAKLAND

SAN JOSE

EUREKA-MCKINLEYVILLE

DATE 09/09/2024

SIGNATURE OF ATTORNEY OF RECORD

Handwritten signature of Ray S. Seilie

INSTRUCTIONS FOR ATTORNEYS COMPLETING CIVIL COVER SHEET FORM JS-CAND 44

Authority For Civil Cover Sheet. The JS-CAND 44 civil cover sheet and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neither replaces nor supplements the filings and service of pleading or other papers as required by law, except as provided by local rules of court. This form, approved in its original form by the Judicial Conference of the United States in September 1974, is required for the Clerk of Court to initiate the civil docket sheet. Consequently, a civil cover sheet is submitted to the Clerk of Court for each civil complaint filed. The attorney filing a case should complete the form as follows:

- I. a) Plaintiffs-Defendants.** Enter names (last, first, middle initial) of plaintiff and defendant. If the plaintiff or defendant is a government agency, use only the full name or standard abbreviations. If the plaintiff or defendant is an official within a government agency, identify first the agency and then the official, giving both name and title.
- b) County of Residence.** For each civil case filed, except U.S. plaintiff cases, enter the name of the county where the first listed plaintiff resides at the time of filing. In U.S. plaintiff cases, enter the name of the county in which the first listed defendant resides at the time of filing. (NOTE: In land condemnation cases, the county of residence of the “defendant” is the location of the tract of land involved.)
- c) Attorneys.** Enter the firm name, address, telephone number, and attorney of record. If there are several attorneys, list them on an attachment, noting in this section “(see attachment).”
- II. Jurisdiction.** The basis of jurisdiction is set forth under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8(a), which requires that jurisdictions be shown in pleadings. Place an “X” in one of the boxes. If there is more than one basis of jurisdiction, precedence is given in the order shown below.
- (1) United States plaintiff. Jurisdiction based on 28 USC §§ 1345 and 1348. Suits by agencies and officers of the United States are included here.
 - (2) United States defendant. When the plaintiff is suing the United States, its officers or agencies, place an “X” in this box.
 - (3) Federal question. This refers to suits under 28 USC § 1331, where jurisdiction arise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an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n act of Congress or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 In cases where the U.S. is a party, the U.S. plaintiff or defendant code takes precedence, and box 1 or 2 should be marked.
 - (4) Diversity of citizenship. This refers to suits under 28 USC § 1332, where parties are citizens of different states. When Box 4 is checked, the citizenship of the different parties must be checked. (See Section III below; **NOTE: federal question actions take precedence over diversity cases.**)
- III. Residence (citizenship) of Principal Parties.** This section of the JS-CAND 44 is to be completed if diversity of citizenship was indicated above. Mark this section for each principal party.
- IV. Nature of Suit.** Place an “X” in the appropriate box. If the nature of suit cannot be determined, be sure the cause of action, in Section VI below, is sufficient to enable the deputy clerk or the statistical clerk(s) in the Administrative Office to determine the nature of suit. If the cause fits more than one nature of suit, select the most definitive.
- V. Origin.** Place an “X” in one of the six boxes.
- (1) Original Proceedings. Cases originating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2) Removed from State Court. Proceedings initiated in state courts may be removed to the district courts under Title 28 USC § 1441. When the petition for removal is granted, check this box.
 - (3) Remanded from Appellate Court. Check this box for cases remanded to the district court for further action. Use the date of remand as the filing date.
 - (4) Reinstated or Reopened. Check this box for cases reinstated or reopened in the district court. Use the reopening date as the filing date.
 - (5) Transferred from Another District. For cases transferred under Title 28 USC § 1404(a). Do not use this for within district transfers or multidistrict litigation transfers.
 - (6) Multidistrict Litigation Transfer. Check this box when a multidistrict case is transferred into the district under authority of Title 28 USC § 1407. When this box is checked, do not check (5) above.
 - (8) Multidistrict Litigation Direct File. Check this box when a multidistrict litigation case is filed in the same district as the Master MDL docket. Please note that there is no Origin Code 7. Origin Code 7 was used for historical records and is no longer relevant due to changes in statute.
- VI. Cause of Action.** Report the civil statute directly related to the cause of action and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e cause. **Do not cite jurisdictional statutes unless diversity.** Example: U.S. Civil Statute: 47 USC § 553. Brief Description: Unauthorized reception of cable service.
- VII. Requested in Complaint.** Class Action. Place an “X” in this box if you are filing a class action under 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23.
- Demand. In this space enter the actual dollar amount being demanded or indicate other demand, such as a preliminary injunction.
- Jury Demand. Check the appropriate box to indicate whether or not a jury is being demanded.
- VIII. Related Cases.** This section of the JS-CAND 44 is used to identify related pending cases, if any. If there are related pending cases, insert the docket numbers and the corresponding judge names for such cases.
- IX. Divisional Assignment.** If the Nature of Suit is under Property Rights or Prisoner Petitions or the matter is a Securities Class Action, leave this section blank. For all other cases, identify the divisional venue according to Civil Local Rule 3-2: “the county in which a substantial part of the events or omissions which give rise to the claim occurred or in which a substantial part of the property that is the subject of the action is situated.”
- Date and Attorney Signature.** Date and sign the civil cover sheet.